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역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역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정 지 운**

# 목 차

|   |           |
|---|-----------|
| <b>제1장 서론</b> .....                       | <b>1</b>  |
| 제1절 연구의 목적 .....                          | 1         |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6         |
| <b>제2장 경찰공무원의 퇴직제도 및 현황</b> .....         | <b>9</b>  |
| 제1절 퇴직과 퇴직관리 .....                        | 9         |
| 1. 퇴직 .....                               | 9         |
| 2. 퇴직관리 .....                             | 14        |
| 제2절 경찰공무원의 퇴직 유형 .....                    | 15        |
| 1. 임의퇴직 .....                             | 16        |
| 2. 강제퇴직 .....                             | 17        |
| 3. 정년퇴직 .....                             | 21        |
| 제3절 경찰공무원의 현황 .....                       | 24        |
| 1. 현직 경찰공무원의 현황 .....                     | 24        |
| 2. 퇴직 경찰공무원의 현황 .....                     | 28        |
| <b>제3장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b> ..... | <b>35</b> |
| 제1절 의의 .....                              | 35        |
| 제2절 최근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 39        |
| 1. 범죄피해자구조금 .....                         | 39        |
| 2. 주거지원제도 .....                           | 45        |
| 3. 형사조정제도 .....                           | 50        |

|   |           |
|---|-----------|
| 제3절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 .....                    | 54        |
| 1. 퇴직 경찰공무원의 사회 활동 .....                  | 54        |
| 2. 지원대상 범죄피해자 .....                       | 55        |
| 3.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 .....         | 69        |
| <b>제4장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b> | <b>75</b> |
| 제1절 경찰의 비전과 목표 .....                      | 75        |
| 제2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조직과 교육 .....             | 79        |
| 1.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경찰 조직 .....                | 80        |
| 2.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경찰 교육 .....                | 82        |
|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                  | 85        |
| 1.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               | 86        |
| 2.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               | 95        |
| <b>제5장 결론 .....</b>                       | <b>99</b> |

참고문헌

부록

< 표 차례 >

|  |    |
|--|----|
| <표 2-1> 2001-2010년 노령화지수 변화추이 .....            | 10 |
| <표 2-2> 연도별 경찰 연령정년제도 변천 .....                 | 22 |
| <표 2-3> 연도별 경찰 계급정년제도 변천 .....                 | 23 |
| <표 2-4> 경찰인력 및 경찰관 정원 변화추이 .....               | 24 |
| <표 2-5> 경찰관 계급별 인력구성 .....                     | 26 |
| <표 2-6> 계급(직급)별 인력분포 비교 .....                  | 27 |
| <표 2-7> 2000-2009년 경찰공무원 퇴직인원 현황 .....         | 29 |
| <표 2-8> 2007-2009년 경찰공무원 계급별 퇴직현황 .....        | 31 |
| <표 2-9> 2007-2009년 경찰공무원 계급별 퇴직현황 .....        | 32 |
| <표 2-10> 퇴직 경찰공무원 연도별 취업현황 .....               | 33 |
| <표 2-11> 퇴직 경찰공무원 분야별 취업현황 .....               | 34 |
| <표 2-12> 퇴직 경찰공무원 연령별 취업현황 .....               | 34 |
| <표 3-1> 2000-2009년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 35 |
| <표 3-2> 2000-2009년 살인 범죄 발생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 | 36 |
| <표 3-3> 2010년 8월 15일 이전 발생 범죄인 경우 .....        | 43 |
| <표 3-4> 2010년 8월 15일 이후 발생 범죄인 경우 .....        | 44 |
| <표 3-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격 .....             | 47 |
| <표 3-6> 국민임대주택 지원절차 .....                      | 48 |
| <표 3-7> 임대조건 .....                             | 49 |

|  |    |
|--|----|
| <표 3-8>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절차 .....                | 50 |
| <표 3-9> 2007-2009년 형사조정시행현황 .....            | 53 |
| <표 3-10> 2000-2009년(10년) 소년범죄 발생·재범 현황 ..... | 59 |
| <표 3-11> 2000-2009년(10년) 살인범죄 발생·검거 현황 ..... | 63 |
| <표 3-12> 2000-2009년(10년) 강도범죄 발생·검거 현황 ..... | 64 |
| <표 3-13> 2000-2009년(10년) 강간범죄 발생·검거 현황 ..... | 66 |
| <표 3-14> 2000-2009년(10년) 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 | 68 |
| <표 4-1> 비전과 목표 .....                         | 76 |
| <표 4-2> 2008-2009년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최종별 활동실적 ...  | 81 |
| <표 4-3> 2008-2009년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별 활동실적 ...  | 81 |
| <표 4-4>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개요 .....                  | 83 |
| <표 4-5>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교과체계 .....                | 84 |
| <표 4-6>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교육인원 배정표 .....            | 84 |

### < 그림 차례 >

|                              |    |
|------------------------------|----|
|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   | 10 |
| <그림 2-2> 경찰공무원 퇴직의 유형 .....  | 16 |
| <그림 2-3> 경찰관 기능별 정원비 .....   | 25 |
| <그림 2-4> 경찰관의 계급별 인력구성 ..... | 27 |
| <그림 2-5> 경찰공무원의 퇴직유형 .....   | 30 |

<그림 3-1> 1996-2009년 범죄증감추이 ..... 36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국민, 영토, 주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國民主權)이고 민주주의(民主主義)이다(헌법 제1조제1항·제2항). 어떤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0283호, 2010. 5. 14, 전부개정) 제4조1)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즉,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진다.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서 활동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가 그 조직을 떠난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그가 조직 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만큼이나 중요하다. 조직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질적·정신적 환경조성을 공정한 인사(人事)라고 한다면, 조

---

1)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직을 떠난 후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조성은 퇴직관리(退職管理)라고 할 수 있다.

경찰<sup>2)</sup>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경찰의 구성원인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신체적 위험을 안게 된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경찰업무를 수행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아무런 대책 없이 60세를 전후하여 경찰 조직을 떠난다.

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라는 물음과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경찰이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945년 이래 경찰 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감 없이 노정시키고 개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답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찰의 개념은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개념으로 그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절대군주시대의 경찰은 지배세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하여 오다가 야경국가시대에는 오로지 범죄자를 체포하는 범위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현대사회의 치안수요는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치안수요의 확대에 따라 경찰의 인력과 조직은 확대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라 볼 수 있다(김원중, “경찰의 직급구조 실태와 발전 방향”,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2면).

3) 경찰의 업무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휴일이나 주야간을 막론하고 일상적으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영우, “대한민국 경찰의 보수체계 현실화 방안”,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2면); 특히 오늘날 범죄의 유형이 흉폭화,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어서 직무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정우열, “대한민국 경찰의 근무환경 및 처우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1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도 해마다 늘어나 2009년도 공상 경찰관 발생 숫자는 1,574명으로 2005년 1,187명과 비교하여 32.6% 증가하였다(경찰청, 2010 경찰백서, 15면).

과거 60세가 장수의 개념으로 여겨지던 때에는 퇴직 후의 생활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대부분 60세가 지나면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60세는 사회에서 제반 활동을 접고 물러나야 할 시기가 아니다. 평균기대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수명이 연장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퇴직 후의 문제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 후에 퇴직자 대부분이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 외에도 개인이 아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한다. 아직 사회에서 유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사회에서 퇴직자로 겪는 고통은 직접 그 상황에 처해보지 못한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를 직접 접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접하게 되며, 범죄인을 상대로 범집행을 하게 된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간 범죄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하던 경찰공무원이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면 그 동안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능력을 잠재우게 되므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로 이해될 수도 있다.

보통 범죄피해자는 남녀노소로 표현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이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대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처럼 범죄의 피해를 당한다. 범죄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겠으나, 가해자의 무성의나 무자력 등 때문에

4) 평균수명은 '2008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남성(76.5년)보다 6.8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0885](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0885) 2010. 12. 7. 검색).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의 피해와 상관없는 제3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책무를 인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국가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고통을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인정될 때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10조). 국가에 대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다. 과거 ‘잊혀진 존재’<sup>5)</sup>에 불과했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sup>6)</sup>과 지원정책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5) 최근까지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형사절차는 범죄자를 체포·처벌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손실을 배상받거나 복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서 가해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할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참고인으로만 취급되었다. 심지어 피해자는 개인적 감정이나 이욕을 앞세워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범죄사건의 ‘해결’이라는 궁극 목표 앞에서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또는 더 중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은 잊혀지고 말았는지 모른다(김용세·김재민,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6, 1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단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 취급되었을 뿐이다(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9, 23면).

6)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형사정책학은 범죄자 개인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줄 수 없었고, 둘째,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최대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형사사법은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인정되는 시기가 되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범죄를 이해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의 피해는 물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는 것이며, 일순간에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금전적 보상만을 위한 법의 마련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우리 경찰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의 경찰(“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다”)로 새롭게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 경찰은 ‘존경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새롭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sup>7)</sup> 경찰의 현 인력으로는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및 진압이라는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모습 그대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미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여 점차 국민의 경찰로서 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미래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담당할 인력을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상정하고,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다(정지운,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5-6면).

7) 경찰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원중, 앞의 논문, 2면).

모색하고자 함이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경찰조직이 현재 경찰인력의 큰 변화 없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의 핵심으로 퇴직 경찰공무원을 최적의 범죄피해자지원자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퇴직 경찰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관하여 숙고하고자 한다.

2009년 퇴직 경찰공무원은 947명이었지만,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이 60세로 통합되는 2013년에는 2008년에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인원인 2,505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전제로 할 때 2013년 이후에 퇴직하게 될 고학력의 경찰공무원(2010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8.5%를 차지)이 매년 2,000명이 넘게 된다. 이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자의 역할이 부여된다면 현재의 경찰이 존경받는 경찰로 변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경찰공무원의 퇴직제도 및 현황으로 구성한다. 제1절은 퇴직과 퇴직관리로서 퇴직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퇴직관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제2절 경찰공무원의 퇴직 유형에서는 임의퇴직, 강제퇴직, 정년퇴직에 관하여 규범적 고찰을 하고, 제3절인 경찰공무원의 현황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의 현황과 퇴직 경찰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현직·퇴직 경찰공무원의 현황을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제3장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로서 우선 제1절 의의를 거쳐 제2절 최근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과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주거지원제도,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미 실시된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형사조정제도를 살펴본다. 제3절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에서는 퇴직 경찰공무원의 사회 활동과 지원대상 범죄피해자를 살펴보고,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이 지원대상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은 제1절 경찰의 비전과 목표에서는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이 범죄피해자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당위성을 논한다. 제2절인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경찰 조직과 교육에서는 경찰 조직으로 인권보호담당관과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활동을 고찰하고, 경찰 교육으로는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본다.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은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과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제1장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하였던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지원 대책 그리고 구체적으로 퇴직 경찰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방안에 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을 통하여 경찰의 발전방안의 제시하고자 주로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국피해자학회의 연구논문과 경찰청에서 발간한 경찰백서 등 간행물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퇴직 경찰공무원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재정적 문제의 해결

방안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역할 활성화 방안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면 후속 연구로 범죄피해자지원을 담당할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산정방법과 재정확보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제2장 경찰공무원의 퇴직제도 및 현황

### 제1절 퇴직과 퇴직관리

#### 1. 퇴직

최근 과학과 의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이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다.<sup>8)</sup>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이 고연령화되는 현상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분류<sup>9)</sup>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노령화사회의 진입은 새롭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sup>10)</sup>

노령화사회란 노령화지수<sup>11)</sup>가 30%를 넘는 경우로서 2010년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령화지수는 67.7%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0-14세 인구구성비와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를 비교하여 산출한 노령화지수를 보면 <표 2-1> 2001-2010년 노령화지수 변화추이와 같다.

8)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예상 수명은 80.5세이다. 10년 전인 1999년보다 4.9세, 1970년보다는 18.6세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남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77세, 여자의 기대수명은 83.8세다. ...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나이별로 보면 ▶ 30세 남자 47.9년, 여자 54.5년 ▶ 45세 남자 33.8년, 여자 40.1년 ▶ 65세 남자 17년, 여자 21.5년이다(중앙일보 2010. 12. 10).

9)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충청투데이 2010. 10. 21).

10) 한상암·신성원,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욕구 및 취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350면.

11)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100

<표 2-1> 2001-2010년 노령화지수 변화추이

(단위:%)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0-14세 | 20.8 | 20.5 | 20.1 | 19.7 | 19.2 | 18.6 | 18.0 | 17.4 | 16.8 | 16.2 |
| 65세이상 | 7.6  | 7.9  | 8.3  | 8.7  | 9.1  | 9.5  | 9.9  | 10.3 | 10.7 | 11.0 |
| 노령화지수 | 36.3 | 38.7 | 41.3 | 44.1 | 47.3 | 51.0 | 55.1 | 59.3 | 63.5 | 67.7 |

출처 : 통계청

<표 2-1>을 보면 2001년에 이미 노령화사회(36.3%)로 접어들었으며 2010년 현재의 노령화지수는 2001년에 비하여 31.4%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의 추세는 다음의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와 같다.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출처 : 통계청

위 <그림 2-1>을 보면 2040년에는 노령화지수가 315.5% $\left(\frac{32.5}{10.3} \times 100\right)$ 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계청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점차 고연령에 달한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환갑(還甲)을 축하하던 우리 사회

의 인식이나 생활양식은 고희(古稀)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고연령화사회에 관한 대책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험 등의 상품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자 개인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고연령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 그리고 고연령자를 직·간접적으로 부양해야 할 경제주체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수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퇴직도 같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할 가치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하는 퇴직(退職, retirement)은 유급의 고용상태에서 물러나 그 직위와 관련된 역할의 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sup>12)</sup> 즉 퇴직은 가정형편, 사망, 고용계약의 만료, 정년 등과 같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행하는 고용관계가 파기되거나 근로계약이 소멸됨을 의미한다.<sup>13)</sup> 퇴직의 의미에 관하여 이러한 정의 외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sup>14)</sup> 퇴직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만큼이나 퇴직자는 매우 다양한 처지가 됨으로써 복합적인 입장<sup>15)</sup>이 된다. 따라서 퇴직이라는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 12) 최웅렬, “대한민국 경찰의 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4면; 한상암·신성원, 앞의 논문, 351면.
- 13) 유봉호, “조기퇴직제가 직무 불안정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면.
- 14) 퇴직의 개념에 관하여 ‘유급의 직업적인 지위와 역할로부터 물러나는 것’(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8면); ‘직업을 그만 둔다는 생애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에 퇴직 이전의 퇴직준비과정과 퇴직 후의 생활이라는 과정을 포함’(박윤규,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2호, 2009, 11면); ‘퇴직은 정년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협약의 산물로서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한상암, “경찰공무원 퇴직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99, 313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은 제3조 제4호에서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5)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퇴직은 직장생활에서의 책임감과 압력으로부터의 기나긴 자유라고 할 수 있다(Rosenkoetter, M and Garris, John M. "Retirement Planning, use of tim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2, 2001,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sup>16)</sup>

한 개인의 생활사(生活史)에서 퇴직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수익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퇴직의 가장 큰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보통 직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급료를 받는 사람이 주 수입원이 없어질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는 퇴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퇴직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형태가 상당히 변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이 변경되는 것은 개인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sup>17)</sup> 장기간에 걸친 직장생활 후에 경험하는 퇴직은 충격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sup>18)</sup>

퇴직자가 퇴직 전에 착실히 준비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거나 연금을 통하여 경제적 곤란이 일정부분 해결되어 보통 예상되는 퇴직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도 퇴직자는 퇴직자가 퇴직 이전에 하였던 주된 사회활동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됨으로써 퇴직자가 퇴직 전에 수행하던 역할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sup>19)</sup> 퇴직자 개인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sup>20)</sup>

703-704).

- 16) 김지선, “경찰공무원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생애설계 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0면.
- 17)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에 대한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퇴직은 평생고용을 고용구조의 기본적인 틀로 했던 기존의 한국사회 또는 공직사회에서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건(event)이라고 할 수 있다(염재호,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및 퇴직자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7면).
- 18)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남성들의 퇴직 당시 심경이 더욱 복잡하다. 퇴직 당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분노, 두려움, 혼란을 경험한다(변화순·이미정·김지경·하현정,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89면).
- 19) 경제적 이유 외에도 사회적 정체성 때문에 이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변화순 외 3인, 위의 책, 192면); 고연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령 제한으로 퇴직자들의 능력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퇴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국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퇴직자들

따라서 퇴직자 개인의 생활은 경제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되었어도 개인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퇴직 전보다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sup>21)</sup>

경찰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일반 공무원 포함)의 퇴직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주된 업무가 범죄·범죄인과 관련된 법집행이다. 즉, 경찰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일반인들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sup>22)</sup> 또한 법집행과정에서 익숙해진 행동을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범인검거나 치안유지 등 사회의 질서나 국가의 존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경찰의 업무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에게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퇴직연령이 비교적 젊다는 것이다.<sup>23)</sup>

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희박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김상균,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46면)

- 20) 대부분 경찰관들은 재직 중에는 퇴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준비는 거의 하지 않으며 퇴직하는 순간까지 직무에 전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인력의 부족, 잦은 초과근무 등으로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퇴직 직전까지 일선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한상암·신성원, 앞의 논문, 350면).
- 21) 퇴직은 후배나 후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넘겨주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워 지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일 수가 있다. 그러나 퇴직은 취업생활을 함으로써 향유했던 모든 심리·사회적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일 수도 있다(이효민,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면).
- 22) 경찰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많은 위험과 교대근무와 같이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자신 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타 직종보다 많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Russell, Harold E. and Beigel, Allan,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for Effective Police Work", Basic Books., Publishers, 1976, 282-290).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경찰공무원에 대한 퇴직의 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공무원과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 2. 퇴직관리

퇴직관리(退職管理, separation management)란 인사행정상 조직내 인력의 퇴직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적정한 퇴직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퇴직이 결정된 전후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sup>24)</sup> 즉 퇴직관리는 퇴직을 전후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25)</sup>

경찰의 퇴직관리는 경찰조직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을 퇴직한 후 어떻게 경찰조직 밖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가이다. 즉 퇴직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후 자신의 퇴직 전 과거의 역할과 밀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가가 경찰의 퇴직관리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퇴직관리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서 부여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sup>26)</sup> 왜

23) 한상암·신성원, 앞의 논문, 350면.

24)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 255면.

25) 퇴직관리는 조직의 이익과 퇴직하는 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져야 하는 것이다. 즉 퇴직관리는 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구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적정 인력보전을 통한 안정성의 유지와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신축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능률성의 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욕구충족이 조직 인력의 안정성 확보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효민, 앞의 논문, 16면); 한편으로는 인력체제의 침체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체제의 불안정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 안정성과 융통성이라는 상충되기 쉬운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 그리고 퇴직자의 선호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인도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엄재호, 앞의 책, 15면).

26) 한상암·신성원, 앞의 논문, 351-352면; 김병섭·양재진, 공무원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2001, 2면;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조직은 사람의 모임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동시에 개별적인 조직참여자의 존재와는 별개의 실체를 형성한

나하면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는 종국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경찰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종이 될 것이며,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무형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경찰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 전에 갖게 되는 퇴직 후의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경찰로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나 영역이 존재하게 되면 재직 중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 제2절 경찰공무원의 퇴직 유형

경찰공무원의 경우 퇴직은 다음의 <그림 2-2> 경찰공무원 퇴직의 유형과 같이 임의퇴직, 강제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7)</sup>

임의퇴직에는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이 있으며, 강제퇴직은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으로 구분된다. 정년퇴직은 연령정년에 의한 퇴직(연령퇴직)과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계급퇴직)으로 구분되며,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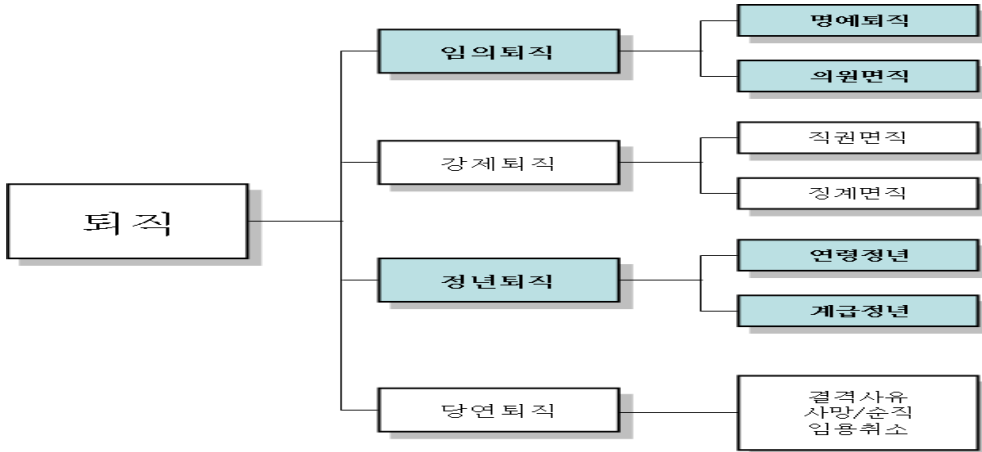
---

다. 경찰조직은 조직참여자인 개인의 이탈이나 변동에도 불구하고 존속될 수 있는 존재, 즉 개인의 생애를 초월하는 존재인 것이다. 경찰에 입문한 개인은 언젠가는 경찰을 떠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은 존속한다는 데서 퇴직관리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경찰에 몸담고 있는 개인의 개별적인 이탈이나 유동이 바로 경찰조직의 와해를 가져온다면 퇴직관리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염재호, 위의 책, 15면); 퇴직경찰관 관리·지원 프로그램의 부족은 경찰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물론 우수한 인적자원의 사회적 낭비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관의 퇴직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퇴직 이후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김상균, 앞의 논문, 47면).

27) 퇴직을 유형을 개인의사 반영 여부에 따라 강제퇴직과 임의퇴직으로 구분하고, 강제퇴직은 정년퇴직(연령정년·계급정년),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으로, 임의퇴직은 명예퇴직, 의원면직으로 이해하는 설명도 가능하다(김상균, 위의 논문, 48-51면).

있는 경우, 사망이나 순직의 경우, 임용취소의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2> 경찰공무원 퇴직의 유형



출처 : 김지선, 앞의 논문, 20면

## 1. 임의퇴직

### 가. 명예퇴직

명예퇴직이란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일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예퇴직의 경우 ①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②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④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제외된다.<sup>28)</sup>

28)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잔여기간이 1-5년 이내인 경우는 <봉급의 1/2×잔여월수>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이 6-10년 이내인 경우는 <봉급의 1/2×[60개월+(정년잔여월수-60)/2]>를 지급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거하여 명예퇴직 결정자는 1계급 특진이 가능하나 휴직자는 제외한다. 경정 이상의 특진은 행정안전부지침상 승진소요최저년수가 경과되어야 한다(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7, 420면).

## 나. 의원면직

의원면직이란 경찰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여 임용권자가 처분으로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원면직의 대표적인 사유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당사자가 퇴직하는 전직퇴직이다.<sup>29)</sup>

## 2. 강제퇴직

### 가. 직권면직

직권면직이란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145호, 2010. 3. 22, 일부 개정) 제22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sup>30)</sup>

#### 1) 직권면직의 사유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제70

29) 그러나 실제로는 의원면직이 자의적이 아닌 타의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김상균, 앞의 논문, 51면); 소위 권고사직의 경우로서 외형적·법적으로는 자의에 의한 퇴직이지만 외적 강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의원면직은 감원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징계퇴직할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이황우 외 2인, 위의 책, 418면).

30)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처분의 사유와 효과면에서 징계면직처분(파면, 해임)과 구별되지만 경찰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경찰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파면이나 해임과 같다. 따라서 직권면직은 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이황우 외 2인, 위의 책, 418면).

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될 때(제1호)이다. 이 경우는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제3호),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4호),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직위해제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게 되는 데(제73조의3제3항) 이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제5호) 등이다.

둘째,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제2호)이다.

셋째,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제3호)이다.

넷째,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제4호)이다.

## 2) 징계위원회의 동의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제1항제2호), ②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제1항제3호) 또

는 ③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sup>31)</sup>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

### 3) 직권면직일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제70조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징계면직

징계면직이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sup>32)</sup>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22201호, 2010. 6. 15, 일부개정)에 의한다.

징계(discipline)란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활동이다.<sup>33)</sup> 경찰직은 징계의 높은 표준이 요구되고, 우리

31) 제26조(징계위원회)

-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개정 2006.7.19>
-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96.8.8>
-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이황우 외 2인, 앞의 책, 419면.

33) 징계목적에는 사후적 처벌이나 불이익처분으로 구성원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O. Glann Stahl and Richard A. Staufenger, Police persnnel Administration, Police Foundation, 1974, p. 185; O. W. Wilson and Roy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McGraw Hill Book Co., Inc., 1977, p. 145). 이러한 징계처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본연의 의도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겠다(이황우 외 2인, 위의 책, 345면).

나라의 현행법 중에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징계규정과 소청절차규정이 징계의 사유나 종류, 결정기관과 절차, 소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34)</sup>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를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이며, 경찰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전보, 근무성적평정점수의 감점, 승진선임순위박탈, 감봉, 벌금, 정직, 강임, 파면 등이 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조는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제1항)을 말하고,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제2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1) 중징계

파면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며, 파면대상자의 교정보다는 조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파면은 향후 경찰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며,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된다.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지급하고 5년 미만 근무한 자는 퇴직급여액의 3/4을 지급한다.<sup>35)</sup>

해임은 경찰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는 것이므로 파면과 마찬가지로 파면보다 가벼운 처분이다.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하지만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sup>36)</sup> 공무원에 재임용되지 못하는 기간이 3년이다. 정직은

34) 공무원의 의무위반이나 법규위반행위가 징계벌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이황우 외 2인, 위의 책, 345-346면).

35) 이황우 외 2인, 위의 책, 347면; 최중술, 경찰인사관리론, 대왕사, 2004, 348면.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이고,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이 보장되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정직의 기간은 1-3개월이다.

## 2) 경징계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정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처분이다. 견책의 경우 6개월과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sup>37)</sup>

# 3. 정년퇴직

## 가. 연령정년

「경찰공무원법」은 연령정년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계급의 구분 없이 60세로 규정하였다.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된 1969년에는 경정이상은 61세, 경위·경감은 51세, 경사 이하는 50세로 계급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1983년, 1985년, 1991년, 1998년의 개정까지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을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의 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계급의 구분을 삭제하였다.<sup>38)</sup>

36)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된다(최종술, 위의 책, 348-349면).

37) 이황우 외 2인, 앞의 책, 348면; 최종술, 위의 책, 349면.

38) **법률 제3799호로 1985년 12월 28일의 개정**이유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찰업무의 발전을 기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경찰의 연령정년제도 변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연도별 경찰 연령정년제도 변천

| 계급    | 69년(제정) | 83년(개정) | 85년(개정) | 91년(개정) |     | 98년(개정) | 08년(개정)    |     |
|-------|---------|---------|---------|---------|-----|---------|------------|-----|
| 경정이상  | 61세     | 61세     | 61세     | 경정이상    | 61세 | 60세     | 계급구분<br>삭제 | 60세 |
| 경위·경감 | 51세     | 55세     | 58세     | 경감이하    | 58세 | 57세     |            |     |
| 경사이하  | 50세     | 50세     | 55세     |         |     |         |            |     |

개정된 연령정년의 내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부칙 제1항),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2년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2년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부칙 제2항)고 함으로써 실질

려는 것”이었고, **법률 제4406호로 1991년 11월 30일의 개정**이유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이었다. 부칙 제2조의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는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고,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 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 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보며,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 제5570호로 1998년 9월 19일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8. 2. 28. 법률 제5527호)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경감이하의 연령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부칙 제2조의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는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해당일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면퇴직되며,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 중인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9월 30일에 종료되도록 하였다.

적인 계급간의 연령정년의 구분삭제는 201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 나. 계급정년

계급정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은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계급정년은 1969년 최초로 도입된 후 4차례(1979년, 1983년, 1985년, 1998년)에 걸쳐 변경되었다. 계급정년은 일정기간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자동 퇴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계급의 인사적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강제조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경찰 계급정년제도의 변천을 연도별로 보면 다음의 <표 2-3> 연도별 경찰 계급정년제도 변천과 같다.

<표 2-3> 연도별 경찰 계급정년제도 변천

| 개정연도 | 69년(제정) | 79년(개정) | 83년(개정) | 85년(개정) | 98년(개정) |
|------|---------|---------|---------|---------|---------|
| 치안감  | 7년      | 7년      | 4년      | 4년      | 4년      |
| 경무관  | 10년     | 8년      | 6년      | 6년      | 6년      |
| 총경   | 10년     | 10년     | 9년      | 9년      | 11년     |
| 경정   | 14년     | 14년     | 11년     | 11년     | 14년     |
| 경감   | 16년     | 16년     | 12년     | 15년     | 폐지      |
| 경위   | -       | -       | 15년     | 18년     | 폐지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의하면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①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②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제2항). 그리고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39) 선승석, 경찰 정년제도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5-6면.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3항),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항).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며(제5항), 계급정년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에서의 근무연수를 산입한다(제6항).

### 제3절 경찰공무원의 현황

#### 1. 현직 경찰공무원의 현황

경찰인력 및 경찰관 정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2-4> 경찰인력 및 경찰관 정원 변화추이와 같다.

<표 2-4> 경찰인력 및 경찰관 정원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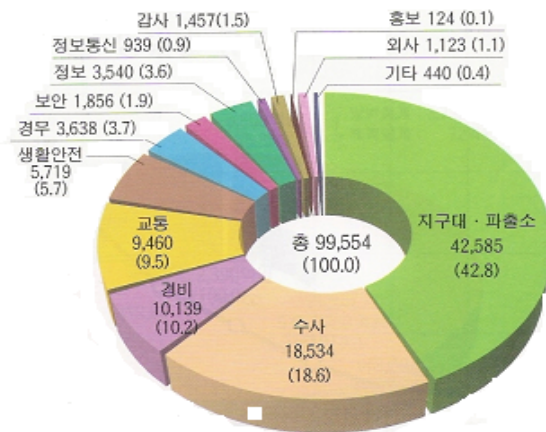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경찰인력(명) | 145,538 | 145,537 | 145,519 | 145,531 | 146,637 | 146,419 | 146,869 | <b>147,651</b> | 139,579 | 131,513       |
| 경찰관(명)  | 90,670  | 90,819  | 91,532  | 93,165  | 93,271  | 95,336  | 95,613  | 96,324         | 97,732  | <b>99,554</b> |

출처 : 경찰청, 2002-2010. 경찰백서, 재구성.

경찰인력은 145,538명(2000년)에서 131,513명(2009년)으로 14,025명이 감소한 반면, 경찰관은 90,670명(2000년)에서 99,554명(2009년)으로 8,884명 증가하였다. 경찰인력은 경찰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전의경으로 구성된다.

2009년 현재 경찰인력은 총 131,513명으로 경찰관 99,554명(75.7%), 일반직·기능직 등 3,842명(2.9%), 전의경 28,117명(21.4%)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0)</sup> 경찰관 99,554명의 기능별 정원비를 보면 <그림 2-3> 경찰관 기능별 정원비와 같다.

<그림 2-3> 경찰관 기능별 정원비 (단위 : 명, %)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0, 13면.

지방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전체의 42.8%(42,585명)을 차지하고, 18.6%(18,534명)을 차지하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5년간(2005-2009년) 경찰관의 계급별 인력구성을 보면 <표 2-5> 경찰관 계급별 인력구성과 같다.

40)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52면.

<표 2-5> 경찰관 계급별 인력구성

| 연도            | 총계(명)  | 차안<br>총감 | 차안<br>정감 | 차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05'           | 95,336 | 1        | 4        | 20        | 34       | 423        | 1,411       | 3,326       | 11,314      | 19,760      | 29,111      | 29,932        |
| 06'           | 95,613 | 1        | 4        | 23        | 31       | 426        | 1,423       | 3,339       | 11,353      | 19,832      | 29,183      | 29,998        |
| 전년대비증감        |        | 0        | 0        | +3        | -3       | +3         | +12         | +13         | +39         | +72         | +72         | +66           |
| 07'           | 96,324 | 1        | 4        | 25        | 35       | 453        | 1,497       | 3,412       | 11,530      | 20,071      | 29,266      | 30,030        |
| 전년대비증감        |        | 0        | 0        | +2        | +4       | +27        | +74         | +73         | +177        | +239        | +83         | +32           |
| 08'           | 97,732 | 1        | 4        | 26        | 34       | 461        | 1,489       | 3,449       | 11,688      | 20,475      | 29,682      | 30,423        |
| 전년대비증감        |        | 0        | 0        | +1        | -1       | +8         | -8          | +37         | +158        | +404        | +416        | +393          |
| 09'           | 99,554 | 1        | 4        | 26        | 34       | 465        | 1,516       | 3,483       | 11,694      | 20,406      | 29,557      | 32,368        |
| 전년대비증감        |        | 0        | 0        | 0         | 0        | +4         | +27         | +34         | +6          | -69         | -125        | +1,945        |
| <b>5년간 증감</b> |        |          |          | <b>+6</b> | <b>0</b> | <b>+42</b> | <b>+105</b> | <b>+157</b> | <b>+380</b> | <b>+646</b> | <b>+446</b> | <b>+2,436</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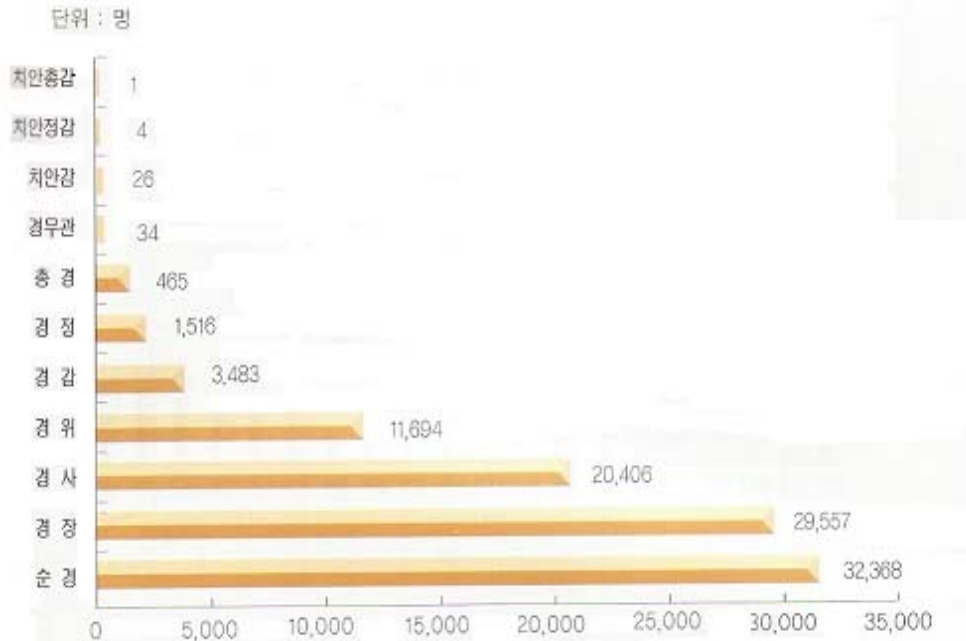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2006-2010. 경찰백서, 재구성.

<표 2-5> 경찰관 계급별 인력구성을 보면 2005년부터 5년간 경찰관 전체인원이 4,218명(차안감 6명, 총경 42명, 경정 105명, 경감 157명, 경위 380명, 경사 646명, 경장 446명, 순경 2,436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무관 이상은 2005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6명(차안감)의 증가에 그친 반면(0.1%), 경위부터 총경까지는 684명(16.2%),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3,528명(83.7)이 각각 증가하였다.

현직 경찰관의 계급별 인력구성을 보면 다음의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경찰관의 계급별 인력구성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0, 13면.

경찰공무원의 인력분포를 국가일반직·지방일반직·병무청·국세청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표 2-6> 계급(직급)별 인력분포 비교와 같다.

<표 2-6> 계급(직급)별 인력분포 비교

| 구분    | 4급(총경)이상 | 5-6급(경정, 경감) | 7-9급(경위이하) |
|-------|----------|--------------|------------|
| 국가일반직 | 6.7%     | 36.4%        | 56.9%      |
|       | 6.7%     | 93.3%        |            |
| 지방일반직 | 1.6%     | 35.3%        | 63.1%      |
|       | 1.6%     | 98.4%        |            |
| 병무청   | 4.0%     | 29.8%        | 66.2%      |
|       | 4.0%     | 96%          |            |
| 국세청   | 2.0%     | 30.3%        | 67.7%      |
|       | 2.0%     | 98%          |            |
| 경찰청   | 0.5%     | 5.0%         | 94.5%      |
|       | 0.5%     | 99.5%        |            |

출처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53면 재구성.

현 경찰관의 계급별 인력분포를 보면 4급(총경)이상은 0.5%이며 5-6급(경정·경감)은 5.0%, 7-9급(경위이하)은 94.5%이다. 4급이상 : 5급-6급 : 7-9급 공무원을 비교하여 보면 국가일반직은 6.7(%) : 36.4(%) : 56.9(%), 지방일반직은 1.6(%) : 35.3(%) : 63.1(%)이다. 그리고 병무청은 4.0(%) : 29.8(%) : 66.2(%)이고, 국세청은 2.0(%) : 30.3(%) : 67.7(%)이다. 경위이하 경찰관은 전체인력의 약 94.5%를, 경정이하 경찰관은 99.5%를 차지하는 등 타 부처에 비해 매우 열악한 침탑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승진적체로 인한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계급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sup>41)</sup>

## 2. 퇴직 경찰공무원의 현황

### 가. 경찰공무원의 퇴직 현황

경찰만의 퇴직관리제도로는 재취업 추천 프로그램과 재고용 프로그램, 그리고 경찰 교육훈련의 일환인 미래설계과정이 있다.<sup>42)</sup>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퇴직 경찰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2-7> 2000-2009년 경찰공무원 퇴직인원 현황과 같다.

41)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53면.

42) **재취업 추천 프로그램**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 후 계급정년, 연령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하는 총경급 이상의 경찰관이 재취업을 신청하며, 경찰청은 신청을 받아 직업지도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희망산하단체에 취업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단, 임용은 각 산하단체장의 권한이다. **재고용 프로그램**은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수사경찰(5년 이상 근무) 정년퇴직자 또는 경찰교육기관(5년 이상 근무)에서 수사 분야 교육경력이 있는 정년퇴직자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재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 **미래설계과정**은 경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과 더불어 노후 인생설계 및 생활안정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교육과정이다. 입교대상자가 경찰의 전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은 이 과정이 유일한 과정이다(한상암·신성원, 앞의 논문, 355면).

〈표 2-7〉 2000-2009년 경찰공무원 퇴직인원 현황

| 구분   | 퇴직     |          |        |        |    |          |          |          |          |          |    |          |    |
|------|--------|----------|--------|--------|----|----------|----------|----------|----------|----------|----|----------|----|
|      | 계      | 의원<br>면직 | 정년퇴직   |        |    | 명예<br>퇴직 | 징계<br>파면 | 징계<br>해임 | 직권<br>면직 | 당연<br>퇴직 | 순직 | 임용<br>취소 | 사망 |
|      |        |          | 소계     | 연령     | 계급 |          |          |          |          |          |    |          |    |
| 2000 | 1,722  | 555      | 348    | 335    | 13 | 504      | 65       | 112      | 3        | 22       | 33 | -        | 80 |
| 2001 | 1,592  | 375      | 725    | 725    | -  | 227      | 30       | 93       | 6        | 19       | 38 | -        | 79 |
| 2002 | 1,731  | 332      | 893    | 881    | 12 | 228      | 30       | 111      | 1        | 19       | 39 | -        | 78 |
| 2003 | 1,767  | 274      | 1,066  | 1,066  | -  | 219      | 31       | 82       | 2        | 18       | 5  | -        | 70 |
| 2004 | 1,928  | 236      | 1,162  | 1,133  | 29 | 161      | 74       | 195      | 4        | 10       | 8  | -        | 78 |
| 2005 | 1,721  | 179      | 1,154  | 1,141  | 13 | 198      | 16       | 78       | -        | 10       | 8  | 3        | 75 |
| 2006 | 1,643  | 192      | 1,050  | 1,038  | 12 | 218      | 26       | 50       | 1        | 19       | 6  | 2        | 79 |
| 2007 | 1,720  | 152      | 1,031  | 1,021  | 10 | 366      | 28       | 54       | -        | 10       | 3  | -        | 76 |
| 2008 | 2,505  | 164      | 1,163  | 1,155  | 8  | 959      | 40       | 77       | -        | 13       | 6  | 2        | 81 |
| 2009 | 947    | 217      | 66     | 49     | 17 | 349      | 111      | 107      | 3        | 9        | 3  | 1        | 81 |
| 전년대비 | -1,558 | +53      | -1,097 | -1,106 | +9 | -610     | +71      | +30      | +3       | -4       | -3 | -1       | 0  |

출처 : 경찰청, 2002-2010. 경찰백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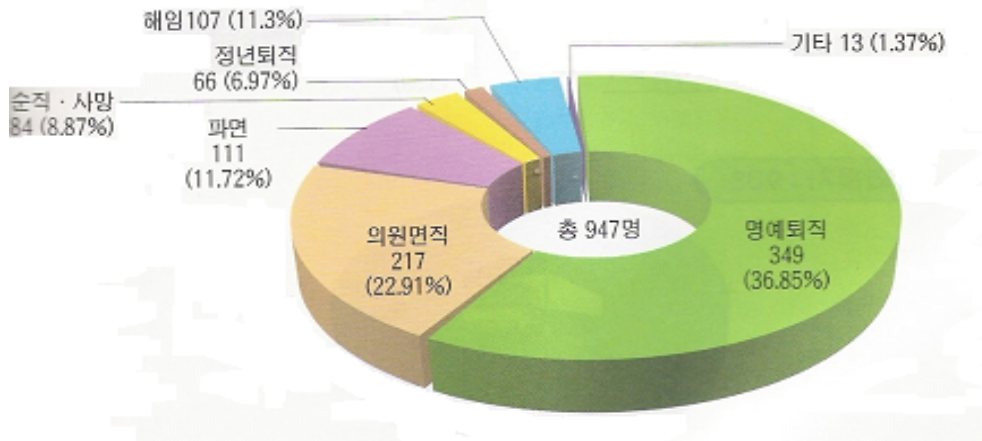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찰공무원의 퇴직인원을 비교해 보면 2009년은 947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다. 2009년의 퇴직 경찰공무원이 가장 적은 주된 원인은 연령정년이 늘어남으로써 퇴직하는 경찰공무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법」은 연령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2013년이 되어야 계급별 연령정년의 구분이 삭제되어 60세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의 2,505명의 퇴직 경찰공무원의 인원은 2013년이 지나면서 다시 비슷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경찰공무원의 퇴직유형을 보면 <그림 2-5>와 같다. 36.85%에 해당하는 349명이 명예퇴직이며, 217명(22.91%)이 의원면직을 하였다. 반면 정년퇴직은 66명(6.97%)에 그쳤다.

2008년 46.41%에 해당하는 1,163명의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959명(38.27%) 그리고 의원면직 164명(6.54%)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림 2-5> 경찰공무원의 퇴직유형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0, 57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퇴직현황을 보면 <표 2-8>과 같다.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이며, 경감이하는 2009년 정년퇴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인원이 경감은 119명, 경위는 790명, 경사는 177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0명이었음은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8년에 연령정년으로 퇴직한 인원에서 경감이하는 없었음은 연령정년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라고 할 것이다.

<표 2-8> 2007-2009년 경찰공무원 계급별 퇴직현황

| 구분   | 퇴직    |          |       |       |       |          |          |          |          |          |    |          |        |
|------|-------|----------|-------|-------|-------|----------|----------|----------|----------|----------|----|----------|--------|
|      | 계     | 의원<br>면직 | 정년퇴직  |       |       | 명예<br>퇴직 | 징계<br>파면 | 징계<br>해임 | 직권<br>면직 | 당연<br>퇴직 | 순직 | 임용<br>취소 | 사<br>망 |
|      |       |          | 소계    | 연령    | 계급    |          |          |          |          |          |    |          |        |
| 2007 | 1,720 | 152      | 1,031 | 1,021 | 10    | 366      | 28       | 54       | -        | 10       | 3  | -        | 76     |
| 2008 | 2,506 | 164      | 1,163 | 8     | 1,155 | 959      | 40       | 77       | -        | 13       | 6  | 2        | 81     |
| 2009 | 947   | 217      | 66    | 49    | 17    | 349      | 111      | 107      | 3        | 9        | 3  | 1        | 81     |
| 치안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치안정감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4        | -        | -        | -        | -        | -  | -        | -      |
| 치안감  | 2     | 1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4        | -     | -     | -     | 5        | -        | -        | -        | -        | -  | 1        | -      |
| 경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        | -     | -     | -     | -        | -        | -        | -        | 1        | -  | -        | -      |
|      | 2     | 1        | -     | -     | -     | 1        | -        | -        | -        | -        | -  | -        | -      |
| 총 경  | 41    | 6        | 29    | 24    | 5     | 4        | 1        | 1        | -        | -        | -  | -        | -      |
|      | 39    | 9        | 25    | 5     | 20    | 1        | 1        | 1        | -        | -        | 1  | 1        | -      |
|      | 48    | 11       | 28    | 18    | 10    | 5        | 2        | 1        | -        | -        | -  | -        | 1      |
| 경 정  | 78    | 8        | 55    | 52    | 3     | 10       | 2        | -        | -        | -        | -  | -        | 2      |
|      | 84    | 6        | 52    | 3     | 49    | 19       | 2        | 3        | -        | 1        | -  | -        | 1      |
|      | 66    | 10       | 38    | 31    | 7     | 11       | 3        | 2        | -        | 1        | -  | -        | 1      |
| 경 감  | 130   | 12       | 94    | 93    | 1     | 20       | -        | 1        | -        | -        | 1  | -        | 3      |
|      | 176   | 15       | 119   | -     | 119   | 33       | 1        | 3        | -        | -        | -  | -        | 5      |
|      | 44    | 17       | -     | -     | -     | 13       | 1        | 7        | -        | 1        | -  | -        | 5      |
| 경 위  | 780   | 32       | 501   | 501   | -     | 215      | 4        | 5        | -        | 4        | -  | -        | 19     |
|      | 1,514 | 35       | 790   | -     | 790   | 635      | 8        | 13       | -        | 2        | -  | 1        | 30     |
|      | 371   | 57       | -     | -     | -     | 218      | 27       | 34       | -        | 5        | -  | -        | 30     |
| 경 사  | 606   | 48       | 351   | 351   | -     | 116      | 15       | 32       | -        | 3        | -  | -        | 41     |
|      | 621   | 56       | 177   | -     | 177   | 271      | 23       | 47       | -        | 8        | 4  | -        | 35     |
|      | 307   | 66       | -     | -     | -     | 91       | 66       | 49       | 2        | 2        | 2  | -        | 31     |
| 경 장  | 58    | 27       | -     | -     | -     | 1        | 6        | 12       | -        | 2        | 1  | -        | 9      |
|      | 39    | 20       | -     | -     | -     | -        | 3        | 7        | -        | 1        | 1  | -        | 7      |
|      | 73    | 36       | -     | -     | -     | 1        | 9        | 12       | 1        | -        | 1  | -        | 12     |
| 순경   | 24    | 17       | -     | -     | -     | -        | -        | 3        | -        | 1        | 1  | -        | 2      |
|      | 28    | 20       | -     | -     | -     | -        | 2        | 3        | -        | -        | -  | -        | 3      |
|      | 21    | 14       | -     | -     | -     | -        | 3        | 2        | -        | -        | -  | -        | 1      |

출처 : 경찰청, 2010-2009-2008 경찰백서 재구성.

<표 2-8>의 내용을 계급별로 정리하면 <표 2-9> 2007-2009년 경찰공무원 계급별 퇴직현황과 같다.

<표 2-9> 2007-2009년 경찰공무원 계급별 퇴직현황

|      | 치안<br>총감 | 치안<br>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계     |
|------|----------|----------|-----|-----|-----|-----|-----|-------|-------|-----|----|-------|
| 2007 | -        | 1        | 2   | -   | 41  | 78  | 130 | 780   | 606   | 58  | 24 | 1,720 |
| 2008 | 1        | 2        | -   | 2   | 39  | 84  | 176 | 1,514 | 621   | 39  | 28 | 2,506 |
| 2009 | 1        | 4        | 10  | 2   | 48  | 66  | 44  | 371   | 307   | 73  | 21 | 947   |
| 계    | 2        | 7        | 12  | 4   | 128 | 228 | 350 | 2,665 | 1,534 | 170 | 73 | 5,173 |

출처 : 최응렬, 앞의 논문, 14면.

<표 2-9>를 보면 경위가 2,665명으로 약 52% 가까이 차지하며, 총경 이하의 퇴직 경찰공무원의 수는 전체 경찰공무원 퇴직인원의 9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수는 연도별 구분 없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나. 퇴직 경찰공무원의 취업 현황

### 1) 퇴직 경찰공무원의 연도별 취업현황

퇴직 경찰공무원의 연도별 취업현황을 보면 <표 2-10>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3년간 총인원 5,083명 중 취업한 인원은 434명으로 8.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3)</sup>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은 2007년

43) 퇴직경찰관의 재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직시 각종 자격증의 취득을 권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수한 교육훈련 및 직무성적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기회는 미미한 수준이다 ... 예를 들어,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해서 1차 시험만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일정기간 근무한 세무공무원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각각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이 당연히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 경력을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에서 운용중인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편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국가자격 취득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한상암·신성원, 앞의 논문, 363면).

7.39%에서 2009년 12.9%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퇴직 후 취업은 퇴직자의 노력이나 사회적 여건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후의 경찰공무원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경찰 외부의 변화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대안책임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업무를 창출하는 것은 경찰 외부의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군공무원을 보면 2008년에 20년 이상 장기복무 퇴직자의 취업률은 19.6%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퇴직 경찰공무원의 취업 비율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44)</sup>

<표 2-10> 퇴직 경찰공무원 연도별 취업현황

| 구분      |       | 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퇴직인원(명) |       | 5,083 | 1,623 | 2,364      | 1,096 |
| 취업자     | 인원(명) | 434   | 120   | <b>172</b> | 142   |
|         | 비율(%) | 8.58  | 7.39  | 7.27       | 12.9  |

출처 : 최응렬, 앞의 논문, 15면.

## 2) 퇴직 경찰공무원의 분야별 취업현황

퇴직 경찰공무원의 분야별 취업현황을 보면 <표 2-11>과 같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434명이 취업하였다.

퇴직 경찰공무원이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는 기업체로 29.3%를 차지하는 127명이었다. 경비업 등도 넓게 이해하면 기업체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의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44)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경찰통계연보와 경찰청 내부자료(2010. 6. 30)를 재구성한 표의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응렬, 앞의 논문, 15면).

<표 2-11> 퇴직 경찰공무원 분야별 취업현황

| 구분       | 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계        | 434(100%)         | 120명       | 172명       | 142명       |
| 산하단체(명)  | 61(14%)           | 18명        | 35명        | 8명         |
| 금융권 등(명) | 39(9.0%)          | 15명        | 14명        | 10명        |
| 경비업 등(명) | <b>86(19.8%)</b>  | <b>25명</b> | <b>40명</b> | <b>21명</b> |
| 기업체(명)   | <b>127(29.3%)</b> | <b>41명</b> | <b>44명</b> | <b>42명</b> |
| 기타(명)    | 121(27.9%)        | 21명        | 39명        | 61명        |

출처 : 최응렬, 앞의 논문, 15면.

### 3) 퇴직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취업현황

퇴직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취업현황을 보면 <표 2-12>와 같다. 취업 경찰공무원 434명의 59.9%에 달하는 260명이 60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이후 60세 미만의 퇴직 경찰공무원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다면 퇴직 경찰공무원의 취업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2-12> 퇴직 경찰공무원 연령별 취업현황

| 구분        | 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합계(명)     | 434(100%)         | 120   | 172        | 142   |
| 60세 미만(명) | <b>260(59.9%)</b> | 63    | <b>124</b> | 73    |
| 60-65세(명) | 159(36.6%)        | 56    | 38         | 65    |
| 66세 이상(명) | 15(3.5%)          | 1     | 10         | 4     |

출처 : 최응렬, 앞의 논문, 16면.

## 제3장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

### 제1절 의의

범죄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1명을 직접적인 범죄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하여도 간접적으로는 그 가족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수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는 당연히 한 명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sup>45)</sup>

최근 10년간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2000-2009년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구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발생 | 1,739,558 | 1,860,687 | 1,833,271 | 1,894,762 | 1,968,183 | 1,733,122 | 1,719,075 | 1,836,496 | 2,063,737 | 2,020,209 |
| 검거 | 1,543,219 | 1,642,118 | 1,694,342 | 1,679,249 | 1,761,590 | 1,512,247 | 1,483,011 | 1,615,093 | 1,812,379 | 1,811,917 |

출처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108면.

<표 3-1>에 의하면 10년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천 8백 60만여(18,669,100)건으로 1년 평균 1백 86만여(1,866,9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1년 평균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범죄피해자는

45)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 행위가 증가하게 되면 그 당연한 귀결로서 피해자의 숫자 또한 증가하게 되고, 범죄 행위가 흉폭화되면 역시 피해자가 입는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한다(문성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심리학적 측면”,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5면).

최소한 가족만을 기준으로 해서 1가구를 3명 내지 4명으로 볼 때 5백 60만 여(5,600,730)명 내지 7백 46만여(7,467,640)명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 형법상 가장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살인 범죄의 10년간 발생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2000-2009년 살인 범죄 발생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 구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발생 | 941  | 1,051 | 957  | 998  | 1,083 | 1,061 | 1,073 | 1,111 | 1,109 | 1,374 |
| 증감 |      | +110  | -94  | +41  | +85   | -22   | +12   | +38   | -2    | +265  |

출처 : 경찰청, 2002-2010. 경찰백서, 재구성.

<표 3-2>에 의하면 10년간 살인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1만 여(10,758)명으로 1년 평균 1천 여(1,076)명이 살인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인 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최소한 가족만을 기준으로 해서 1가구를 3명 내지 4명으로 볼 때 3천 여(3,228)명 내지 4천 여(4,304)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범죄증감추이를 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1996-2009년 범죄증감추이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0, 136면.

<그림 3-1>은 총범죄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의 증가는 범죄피해자의 증가로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무관심했으며,<sup>46)</sup> 최근에 들어서서야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형편이다.<sup>47)</sup>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7766호, 2005. 12. 29, 일부개정)과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7731호, 2005. 12. 23, 제정)을 통합하여 전부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0283호, 2010. 5. 14, 전부개정)과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84호, 2010. 5. 14, 제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sup>48)</sup>

하지만 법률의 개정과 제정만으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며 당면한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sup>49)</sup> 즉

- 46) 지금껏 우리 사회는 ‘피해자’부분은 배제시킨 채로의 범죄 행위를 이해하고 다루어왔다. 그동안 형사 사법 절차는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만 치중하느라 범인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구금하고 재활시키고 연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재활시키고 연구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도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피해자들의 현실이었다(문성원, 위의 논문, 5면).
- 47) 최근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 사인(私人)에 의한 복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외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현대 형사사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정지운, “경찰의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역할”,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8면).
- 48)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범위와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두얼·이승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기본원칙”,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 토론회 자료집(2010. 6. 21), 한국개발연구원, 2010, 99면).
- 49)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구조법 포함)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 배상명령제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법률구조법, 특정강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중인신변안전조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한 규범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의 통

,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적절히 융화되어 시행될 때 2011년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의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법제도상의 금전적 배상을 확대하고 형사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면 과거에 비해 보다 진일보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학계와 실무계의 요청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금전에 의한 피해회복만으로 범죄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갖게 되는 소외감이나 고립감은 범죄피해로 인한 외부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법률적 대응의 변화는 과거에 비하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범죄피해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피해지원보다 법률적·물질적(금전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한 본질적인 지원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받기 이전과 가장 유사한 정도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물론 범죄피해이전의 상황과 동일한 정도의

---

합성(unity)을 유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보호영역의 중복성과 비형평성, 자원배분의 불균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수준에서 보상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이다(김은경,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쟁점과 과제-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1번).

활동을 범죄피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50)</sup> 하지만 그 상태에 유사한 상태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의 한 방안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은 결국 경찰이 범죄의 진압이나 예방 등의 역할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범죄에 관한 전문가인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본다.<sup>51)</sup>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경찰이 평생 혹은 장기간 몸담은 경찰조직에서 업무처리과정상 익힌 범인과 범죄에 관한 경험은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최근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찰이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최근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1. 범죄피해자구조금

#### 가. 의의

50) 예컨대, 살인범죄의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그 사건의 잔상으로 인한 고통은 장례를 치른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삿날이나 기념일 혹은 사망한 가족과 같이한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

51) 우리 사회의 일선에서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기관인 경찰(경찰법 제3조)이 피해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진압과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통한 법질서의 확립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치국가·민주국가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정지운, 앞의 논문, 10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조금의 지급 대책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로 인한 사망, 장애,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조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이며 국가가 범죄발생의 방지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와 사회적 복지 개념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 나. 지급요건

지급요건은 지역적 요건, 인적 요건, 대상범죄, 피해자 요건, 가해자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지역적 요건 · 인적 요건

지역적 지급요건으로 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대상 피해를 입힌 범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인적 지급요건으로 범죄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일 경우에는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2) 대상 범죄

지급이 되는 대상 범죄는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제한된다. 따라서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또한 고의범이어야 하고 과실범은 제외된다. 고의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은 포함된다.

### 3) 피해자 요건 · 가해자 요건

피해자 요건으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어야 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고, 장해구조금은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sup>52)</sup> 상의 10급까지의 장해인 경우에 지급된다. 중상해 구조금은 주요 장기의 손상, 신체 절단 및 변형,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전치 2개월 이상의 상해인 경우에 지급된다.

가해자 요건으로 현행법은 과거의 규정이었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이 없다. 가해자의 자력은 향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sup>53)</sup>에서 문제될 뿐이다.

## 다. 구조금의 종류와 지급 금액의 결정

### 1) 범죄발생 시기별 구조금 지급 금액

범죄발생 시기별로 구조금의 종류와 지급 금액의 결정방법이 다르다. 우선 2010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2010년 15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인 경우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4조(구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고 하

52) 부록1 [별표 1]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 참조

53) 구상권의 행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지구 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관할 지검장이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피해자의 주소지, 범죄 발생지 관할 지검과 대응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검찰이 주체가 되어 소송 수행하되 향후 업무량,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였기 때문이다.

### 가) 2010년 8월 14일까지 발생한 범죄

2010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인 경우에는 2009년 4월 20일 이전 범죄와 2009년 4월 20일부터 2010년 8월 14일까지 발생한 범죄로 다시 나뉜다. 그 이유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25호, 2009. 4. 20, 일부개정)이 개정되면서 구조금의 금액과 산정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유족구조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09년 4월 20일 이전의 범죄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은 일괄적으로 1,000만원<sup>54)</sup>(시행령 제12조)이었으나, 2009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은 1,5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시행령 제12조).<sup>55)</sup>

그리고 장해구조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09년 4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 1급에서 3급까지 구분하여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으로 하였으나(시행령 제13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지급대상 장해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하였고, 1급 3,000만원에서 6급 600만원까지로 지급액도 증액하였다(시행령 제13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3> 2010년 8월 15일 이전 발생 범죄인 경우와 같다.

54) 제12조 (유족구조금의 금액) 유족구조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55) 제12조 (유족구조금의 금액) 유족구조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부록2 [별표 3] 유족구조금에 대한 기준표(제12조 관련) 참조).

〈표 3-3〉 2010년 8월 15일 이전 발생 범죄인 경우

| 내용    | 09. 4. 20. 전 범죄   | 09. 4. 20. - 10. 8. 14.   |
|-------|---|---|
| 유족구조금 | ○ 1,000만원 지급  | ○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생계유지 상황 고려하여 차등 지급  |
| 장해구조금 | ○ 1급-3급<br>- 1급 : 600만원<br>- 2급 : 400만원<br>- 3급 : 300만원 | ○ 1급-6급까지 확대<br>- 1급 : 3,000만원<br>- 2급 : 2,500만원<br>- 3급 : 2,000만원<br>- 4급 : 1,500만원<br>- 5급 : 1,000만원<br>- 6급 : 600만원<br>× 1(일정요건의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또는 1/2(그 외 대상자) |

출처 : 정유미,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주거지원제도”, 한국피해자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29면.

### 나) 2010년 8월 15일 이후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었다(제17조제1항).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며(제17조제2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제17조제3항).

우선 유족구조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제1호), 둘째,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제2호), 셋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제3호) 등이다. 이 경

우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제3항).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 관하여는 제4항<sup>56)</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8월 15일 이후 발생 범죄인 경우에 구조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2010년 8월 15일 이후 발생 범죄인 경우

|   |   |  |   |                                  |
|---|---|--|---|----------------------------------|
| 기준금액                                    | × | 개월 수   | × | 배 수                              |
| 피해발생 직전 3개월<br>평균소득 또는 일용<br>근로자 월 평균임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해구조금은 등급<br/>별로 3-30개월</li> <li>· 유족구조금은 유족<br/>순위에 따라 18-30<br/>개월</li> </ul> |   | 유족 또는 가족의 수,<br>부양 여부에 따라 결<br>정 |

출처 : 정유미, 위의 논문, 29면.

##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피해발생 이전의 평균소득을 산정한다.<sup>57)</sup> 평균소득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산정한다. 2010년 현재는 약 150만원 선이고,<sup>58)</sup> 평균 소득이 입증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

56)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57) 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이 기준이 되며, 급여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다.

58) 도시 일용 근로자 평균소득은 대한 건설협회가 반기별로 발행하는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자 평균소득의 2배(약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연령 그리고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월 수를 산정하여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을 정한다.

## 2. 주거지원제도

### 가. 목적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sup>59)</sup>이다.<sup>60)</sup>

범죄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은 첫째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복지증진이고, 둘째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복귀도모라고 할 수 있다. 주거지원의 종류로는 첫째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www.cak.or.kr](http://www.cak.or.kr) 에서 확인가능)상 2010 상반기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68,965원이며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1,517,230원이다.

59)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 주거지원, ...

60)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제2조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신청)

-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2조(주거지원 신청)

-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택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sup>61)</sup>

## 나. 주거지원 종류

###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방안

#### 가) 의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방안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임대)해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근거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92호, 2010. 10. 8, 일부개정)이다.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와 대한토지주택공사이며, 공급규모는 연간 약 5만호 정도이다.

#### 나) 지원요건 및 절차

##### (1)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① 범죄피해자일 것, ②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③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요건을 충족할 것 등이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36㎡-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이다.<sup>62)</su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5항제10호)<sup>63)</sup>에 따른 입주자격을 보면

61) 정유미, 앞의 논문, 40면.

62) 정유미, 위의 논문, 44면.

63)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

<표 3-5>과 같다.

<표 3-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격

| 종류               | 주택보유여부          | 단독세대주가가능여부 | 월평균 소득                          |
|------------------|-----------------|------------|---------------------------------|
| 50㎡ 미만           | 무주택 소유<br>자 일 것 | 40㎡ 이하만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br>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
| 50㎡ 이상<br>60㎡ 미만 |                 | 단독세대주 제외   |                                 |
| 60㎡ 초과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br>당 월 평균소득 이하     |

출처 : 정유미, 앞의 논문, 44면.

## (2) 지원절차

국민임대주택 지원절차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LH 홈페이지<sup>64</sup>)를 통하여 공고, ② 범죄피해자확인증(가칭) 발급신청, ③ 심사 및 확인증 발급, ④ 청약신청, ⑤ 당첨자 결정, ⑥ 입주계약 및 입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범죄피해자확인증은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경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며, 심사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한다. 확인증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신청을 검토하여 발급한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피해자는 위 확인증 첨부하여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LH에 청약신청하고,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사하게 되는데 범죄피해자를 우선공급대상자로 하여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지원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다.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4) <http://www.lh.or.kr/>

<표 3-6> 국민임대주택 지원절차



출처 : 정유미, 앞의 논문, 45면.

## 2)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방안

### 가) 의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 명의로 전세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법적 근거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며,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와 대한토지주택공사이다. 공급규모는 2010년 약 1,050호이고 범죄피해자 할당 분은 71호이다.<sup>65)</sup>

### 나) 지원요건 및 절차

#### (1) 지원요건

65) 정유미, 앞의 논문, 42면.

지원요건은 ① 범죄피해자일 것, ②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③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요건을 충족할 것 등이며, 임대조건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로 구분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지원대상주택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의 <표 3-10> 임대조건과 같다.

<표 3-7> 임대조건

| 구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 임대보증금   | 250-350만원  |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내 전세금의 5%                                      |
| 월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2%)   |
| 지원대상 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br>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출처 : 정유미, 앞의 논문, 4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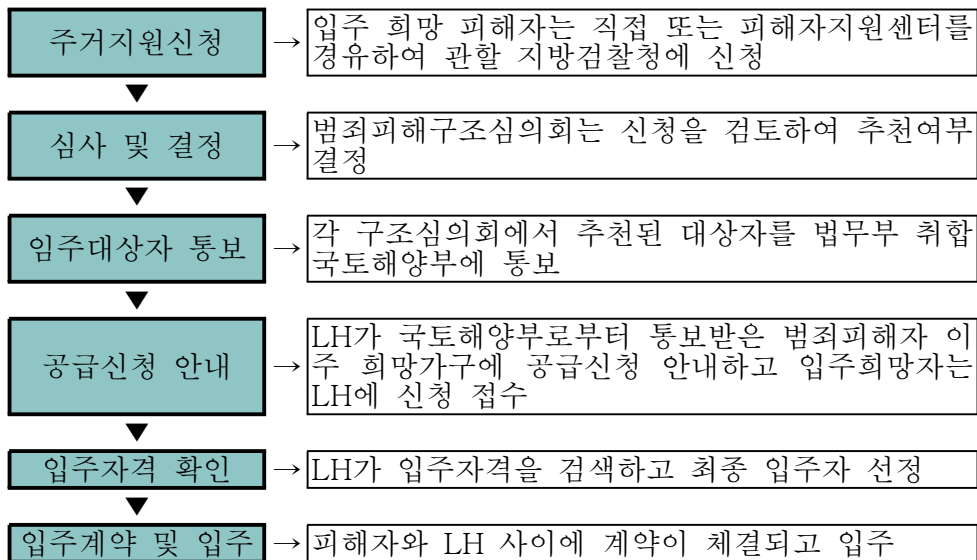
## (2) 지원절차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절차는 ① 주거지원신청, ② 심사 및 결정, ③ 입주대상자 통보, ④ 공급신청 안내, ⑤ 입주자격 확인, ⑥ 입주계약 및 입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경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각 구조심의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법무부에서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통보하고, LH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받은 범죄피해자 이주 희망가구에 공급신청을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LH에 신청한다. LH가 입주자격을 검색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함으로써 절차가 끝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3-2>와 같다.

<표 3-8>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절차



출처 : 정유미, 앞의 논문, 49면.

### 3)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준비서류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준비서류는 주거지원 신청시(심의회)와 주택공급 신청시(LH) 그리고 계약시에 따라 구분된다. 정리하면 <부록 3>과 같다.

## 3. 형사조정제도

### 가.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제6장(형사조정)에서 형사조정제도를 규정하여 최근 그 유용성이 확대되고 있는 형사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sup>66)</sup>

형사조정이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3자의 조정 하에 범죄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sup>67)</sup>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조정’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조정제도의 도입이 오늘날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68)</sup>

2004년 10월 대검찰청이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시달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06년 6월까지 전국의 55개 검찰청 소재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sup>69)</sup>

2006년에 대검찰청이 사건처리의 일환으로 화해중재(형사조정)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4월 1일부터 대전지검과 부산지청에서, 동년 5월 1일부터 서울 남부지검에서 시범적인 화해중재업무가 실시되었다. 2007년 8월 이후 대검찰청의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에 따라 전국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실시되었다.<sup>70)</sup>

66) 김재희,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51면.

67) 형사조정이라는 용어와 함께 형사화해제도 또는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란 것도 자주 언급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민사적 조정 내지 화해에 형사절차상의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화해제도는 오늘날 사인소추제도와 결합된 화해전치주의, 미국식의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Victim-Offender Mediation) 및 독일형법 제46조의a와 같은 가해자-피해자의 화해 내지 조정(Täter-Opfer-Ausgleich)등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어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현황과 전망”, 경성법학 제14집 제1호, 2005, 27-28면 주)30).

68)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2009, 261면;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조정이 이루어지면, 형사절차의 조기 종료가 가능해지고 이것이 양형상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및 ‘합의(reconciliation)’라는 용어가 유사하게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김재희, 앞의 논문, 52면).

69) 이로부터 일부 검찰청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형사조정제도 또는 화해중재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한 화해중재(형사조정)는 대전센터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대전센터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센터들도 대부분의 화해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김재희, 위의 논문, 55면).

이처럼 형사조정제도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합리적, 평화적 해결 및 지역사회가 분쟁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사적자치 영역에서의 분쟁해결 능력을 증대하고, ‘응보와 제재’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 조정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재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효율적 형사사법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형사사법의 비용절감의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sup>71)</sup> 특히 각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모두를 거쳐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가해자에 입장에서도 조속히 형사절차로부터 벗어나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는 용서와 사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신적 치유의 효과도 피할 수 있다.<sup>72)</sup>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정의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자 참여에 의한 분쟁해결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형사조정시행현황을 보면 <표 3-11>과 같다.

- 
- 70)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에 의존하던 형사조정제도는 2006년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대부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화해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일종의 중재자로서 화해중재업무를 행하여 오던 것을(「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호)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형사조정실무운영시행령(2009. 11. 10 제정, 2010. 8. 15 일부개정) 제4조)에서 행하고 있다(김재희, 위의 논문, 55-56면).
- 71) 형사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특유한 ‘남고소’ 또는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처하려는 정책목표도 중요한 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재희, 위의 논문, 56면).
- 72) 사법기관의 입장에서도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사건이 간결하게 해결된다는 점에서 소송경제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사절차에서도 대개의 경우 고소취소를 수반하는 합의는 재고소나 항고의 우려를 일소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기소와 불기소의 한계선상에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김재희, 위의 논문, 56-57면); 최영승,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 73면.

〈표 3-9〉 2007-2009년 형사조정시행현황

| 연도   | 의뢰건수   | 성립건수  | 성립률   |
|------|--------|-------|-------|
| 2007 | 7,963  | 3,680 | 51.0% |
| 2008 | 11,496 | 5,632 | 51.6% |
| 2009 | 16,201 | 8,457 | 52.2% |

형사조정을 시행한 2007년에는 51.0%, 2008년에는 51.6%, 2009년에는 52.2%의 조정의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정의 의뢰건수와 성립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73)</sup>

## 나. 형사조정의 대상 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은 형사조정의 대상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시행령 제46조에서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제1호),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제3호), ④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이 고소를 통해 형사화하는 경우의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다. 형사조정의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나 개인 간의 이해다툼이 있어 일면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기 곤란

73) 이는 형사조정제도가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점차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김재희, 위의 논문, 57면).

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검찰이 고소나 고발에 의해 업무의 지장을 받고 있음은 이미 다양한 사회문제화한 지 오래 되었다.<sup>74)</sup>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취지로 보인다.

## 제3절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

### 1. 퇴직 경찰공무원의 사회 활동

현재 퇴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그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제2장 제3절의 <표 2-12>에서 보듯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비업 등에 취업한 퇴직 경찰공무원은 86명(2007년 25명, 2008년 40명, 2009년 21명)으로 총 퇴직 경찰공무원의 취업인원 중 19.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하단체나 금융권 등과 기업체에서도 퇴직 경찰공무원의 경력과 경험을 어느 정도 반영한 취업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짓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퇴직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능력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74) ‘돈 안갠다’ 고소하고, ‘열받는다’ 고소하고, ‘묻지마’ 고소하는 ... ‘고소공화국’  
고소·고발로 대검에 접수된 사건은 2007년 56만 4,532건, 2008년 59만 4,058건, 2009년 61만 8,470건, 2010년 8월까지 33만 9,43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다. 문제는 고소사건 중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 많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불기소된 사건만 해도 128만 683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묻지마’ 식 고소·고발이 쏟아져 검찰은 일에 허덕인다. ...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민사로 해결 가능한 사건을 형사소송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특히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등이 포함된 ‘재산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상대가 자기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재판을 하면 되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고소·고발사건 중 재산범죄의 비율은 IMF 때인 1999년 66.9%를 최고점으로 2003년 66.9%, 2005년 63.6% 등 계속해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매해 고소·고발 사건이 늘자 검찰은 2007년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식 재판 이전에 민간 조정위원회에서 화해하는 제도다(조선일보 2010. 11. 27).

직업형태는 몇 가지로 한정된다. 경비지도사·경호관리사와 신변보호사·시설경비사·호송경비사·기계경비사·특수경비사·민간조사원·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등이 있다.<sup>75)</sup> 이러한 유형은 경비관련 분야, 민간조사분야, 교통분야 등으로 한정된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위의 활동분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모든 범죄의 특성상 경찰의 경력과 경험이 중시된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그 전문성이나 인력의 규모에 있어서 경찰이 가장 책임자임은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다.

특히 경찰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이 매우 적절하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생물은 번식을 위하여 자손의 확산에 최적의 환경을 찾아 보금자리를 만든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과 경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퇴직 경찰공무원에게 제시된다면, 이러한 방안은 경찰과 국가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범죄의 해결과 범죄인의 검거에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퇴직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지원대상 범죄피해자

75) 강용길,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범죄대응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경찰과 사회, 경찰대학, 2008, 681-689면.

이상적인 범죄피해 지원대상자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이나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선 몇 가지 유형의 범죄피해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퇴직 경찰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는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자의 성적인 특성과 연령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범죄피해자, 여성대상범죄피해자, 노인대상범죄피해자들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에 범죄의 유형을 기준으로 살인·강간·강도·폭행범죄의 피해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선정은 새로운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다양한 관점에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 아동·청소년대상범죄피해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 등 가족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 아동범죄의 피해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평생 동안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김수철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어떤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수철(45세)은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A양(8세)<sup>76)</sup>을 집으로

76) 2010년 12월 9일 서울 모 병원 입원실. 120cm가 조금 넘는 몸무게 27.5kg의 가냘픈 체구. 아직 이가 완전히 자라지 않아 웃을 때 앞니 두 개만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다. ... 김수철에게 성폭행 당한 뒤 6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A양. ... 옆구리에는 배변 주머니가 있었다. 반 년 간 차고 있던 지긋지긋한 주머니가 다음 주면 떼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장(腸)을 항문에 잇고 직장을 봉합하는 등 수술만 6차례 받았다. 매주 한번씩은 전신 마취를 한 뒤 치료받고 있다. 어머니 박모 씨(38)는 “상처가 너무 아파 딸아이가 밤새도록 울면서 잠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의료진은 회복을 해도 다친 부위는 정상인의 70%가량만 제 기능을 할 거라더군요. 그 짐승을 생각하면 분해서 온몸이 부르르 떨려요”라며 울먹였

납치해 성폭행했다.

최근 아동성폭행과 관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언론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유형은 매우 많다. 아동은 육체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sup>77)</sup>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성폭행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한 범죄 외에도 가족에 의한 범죄(물론 범죄로 인정되기 이전의 단계도 있을 수 있다)도 있다.

청소년대상범죄는 대부분 학교폭력의 대상으로 나타나지만, 조직폭력 등 성인범죄의 영향을 받은 범죄의 피해자도 나타날 수 있다. 학교폭력 중 하나로 이해되는 소위 ‘왕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범죄피해자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중심으로(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연령은 비슷하지만 학생이 아닌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각종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외부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하는 이유

다. 아버지는 딸을 간호하려고 8월 직장을 그만뒀다. 사건 당시 살던 집도 먼 곳으로 옮겼다. 알려지는 게 싫어 병실의 이름도 가명으로 해뒀다(동아일보, “직장 관두고 이사 해봐도 ... 쫓아오는 ‘그 악몽’” 2010. 12. 10).

77)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문가 진술 청취제 도입을 제안한 데이비드 코윈 유타대 교수는 전문가 진술 청취제 제안의 계기가 된 ‘맥마틴 유치원 사건’에 관하여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7년간의 긴 재판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배심원들이 이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진술’에 관하여 “유치원 안에 터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현장엔 없는 식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 안에 성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고 하였다(중앙일보 2010. 11. 19).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3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가 새로운 가해자가로 변하게 되는 3차 피해는 일종의 복수에 의한 가해이지만 그 원인이 피해의 회복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결국은 피해자를 위한 지원의 미비가 그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78)</sup>

대구의 초등학교 집단성폭행사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대구지법이 시교육청의 50% 책임<sup>79)</sup>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와 이 피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초등학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이므로 성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형벌의 부과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대상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78) 김부남은 자신이 9세 때 아웃 집 아저씨인 A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김부남은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였지만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 가지 못하였다. 김부남은 자신의 행동이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A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김부남은 법적으로 A을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하기로 하였다.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A을 찾아가 식칼로 살해하였으며, 현장에서 검거되었다(<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61459> 2010. 12. 6. 검색)

79) 대구 초교 집단성폭행사건 ... 시교육청 50% 책임  
지난 2008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교육청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유경 판사는 "대구교육청은 성폭행 피해자인 A양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880여만 원, A양의 어머니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는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 선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는 일부 교사의 수사기관 신고 요구 등을 묵살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0. 9. 14).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심층적인 피해자 특성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성(被害者性)을 판단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피해를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다. 학교의 선생님이 청소년의 피해발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선생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소년범죄의 발생현황과 재범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3-10>과 같다.

<표 3-10> 2000-2009년(10년) 소년범죄 발생·재범 현황

| 구분     | 총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소년범    | 1,103,719 | 143,024 | 131,059 | 115,210 | 96,697 | 86,861 | 83,477 | 90,628 | 115,661 | 123,044 | 118,058 |
| 재범자    | 359,833   | 50,588  | 48,216  | 41,749  | 33,814 | 29,431 | 25,920 | 26,450 | 33,687  | 31,771  | 38,207  |
| 재범률(%) | 32.6      | 35.4    | 36.8    | 36.2    | 35.0   | 33.9   | 31.1   | 29.2   | 29.1    | 25.8    | 32.4    |

출처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87면 재구성.

<표 3-10>에 의하면 10년간 소년범죄의 총 발생건수는 1,103,719건이고 이 중 32.6%에 해당하는 359,833건이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범죄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여성대상범죄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주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이다. 즉 여성대상범죄피해자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이해할 수 있다.<sup>80)</sup> 성폭력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어도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

80) 김보은의 어머니는 김보은이 7살 때 의붓아버지인 A와 재혼하였고, 김보은은 9살 때부터 A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A는 김보은과 김보은의 어머니를 번갈아 성폭행하였으며, 집에 식칼과 쥐약을 갖다 놓고 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김보은은 대학에 진학하여 기숙사에서 살면서 주중에는 의붓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 있었고, 자신의 괴로움을 남자 친구인 B에게 털어 놓았다. B는 의붓아버지

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의한 입은 피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외부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범죄피해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 외부에 그 사실을 공표하는 피해자는 1차 피해 외에도 막대한 2차 피해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개인의 고통을 평생 안고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교육의 필요성 증가에 의하여 직장을 중심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여성대상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다른 피해자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다. 노인대상범죄피해자

최근의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노인대상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sup>81)</sup>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노인의 신체적인 활동곤란을 이

---

를 찾아가 성폭행을 그만 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충주 검찰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는 오히려 "다 잡아 넣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김보은과 B를 협박하였다. 김보은과 B는 강도로 위장하여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1992년 1월 17일 B가 김보은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김보은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A를 식칼로 살해하였다. B는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집을 나갔으며, 김보은은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들은 1월 19일 구속되었다(<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60137> 2010. 12. 6. 검색).

- 81) 노인이라는 용어는 생활연령 또는 달력상의 나이를 뜻하는 역연령(曆年齡)의 의미와 신체적·정신적 노화 등 다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노인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의 정의를 기초하고 하고 있는데, 이 학회에서는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은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생체의 조직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

용한 범죄를 우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화의 적응곤란을 이용한 재산범죄 등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죄의 경우도 대부분 노인 등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여타 범죄피해자와 다르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범죄피해자가 증가추세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9년 노인범죄피해자는 34,64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08년에는 110,5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 범죄피해자수는 3.2배 증가했다. 1999년 기준 노인범죄피해자 증가율 평균은 84.8%에 이른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범죄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61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범죄피해자는 더욱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sup>82)</sup>

노인들만 생활하는 생활유형(부부 또는 독거)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접근이나 지식의 습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게 되고 노인의 이러한 약점을 노린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라. 살인범죄피해자

살인범죄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sup>83)</sup> 살인범죄를 분석해보면 살인범죄

---

퇴하고 있는 사람; 셋째, 생체의 전반적인 기관·조직·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다섯째, 생체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함으로써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규정된다(유지웅, 노인범죄 발생 추이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09, 3면).

82) 유지웅, 노인 범죄피해 추이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10, 13면.

83) 금전, 원한, 애정, 불만 때문에 살인을 하는가 하면 다른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인을 하기도 한다(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2, 58면).

의 피해자의 반 이상이 범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sup>84)</sup> 살인범죄는 1인이 1인을 살해하는 경우부터 수 십 명까지 살해하는 경우까지, 또는 격한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정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까지 살인범죄의 규모와 범죄유형이 다양하다.<sup>85)</sup>

살인의 일반적 경향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성에 의한 살인은 격정이나 싸움, 말다툼에 의한 기회적인 살인이 많기 때문에 면식이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가능성이 많으며, 여성에 의한 살인은 어느 정도 계획적이거나 가족 간의 불화나 원한, 분노에 의해서 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면식이 있는 사람(남편, 자녀, 애인 등 가해자와 특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살해하는 가능성이 높다.<sup>86)</sup>

살인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김길태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어떤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길태(33세)는 2010년 2월 부산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모 양(13세)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살인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지만 유족 등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피해자가 남에게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sup>87)</sup>

84) 2004년도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용인인 경우, 피고용인 경우, 직장동료인 경우, 친구인 경우, 애인인 경우, 동거친족인 경우, 기타 친족인 경우, 거래 상대방인 경우, 이웃인 경우, 기타 지인인 경우가 총 1200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715건(59.5%)이나 되는 것이다. 서로 아는 사이일 경우 살해 위협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든지 징후가 보여도 본인은 물론 형사사법기관이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중 특히 가정불화에 의한 살인이 122건(10%), 보복에 의한 살인 71건(5.9%)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살인피해가 보이고 있는 하나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1면).

85) 조병인 위의 책, 58-61면.

86)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1-12면.

87) 부산 기장군 철마면 실로암 공원묘지 납골당. 홍모 씨(38세·여)가 자주 찾는 곳이다. 김길태에게 살해된 딸의 유해가 있어서다. ... 자주 꿈에 나오는 딸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울고만 있다. 홍 씨는 몇 달 전 직장을 그만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일을 제대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유족이나 지인 등이 갖는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살인범죄의 피해자(유족 등)도 또한 3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 이후 근대의 법체계가 정립되기 전까지 복수는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의무 내지 권리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살인범죄의 발생현황과 검거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3-11>과 같다.

<표 3-11> 2000-2009년(10년) 살인범죄 발생·검거 현황

| 구분     | 총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발생     | 10,758 | 941   | 1,051 | 957   | 998   | 1,083 | 1,061 | 1,073 | 1,111 | 1,109 | 1,374 |
| 검거     | 10,678 | 955   | 1,076 | 994   | 1,038 | 1,041 | 1,023 | 1,054 | 1,069 | 1,087 | 1,341 |
| 검거율(%) | 99.3   | 101.4 | 102.4 | 103.8 | 104.0 | 96.1  | 96.4  | 98.2  | 96.2  | 98.0  | 97.6  |

출처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98면, 2010 경찰백서, 123면 재구성.

<표 3-11>에서 보듯이 2000년의 941건에서 2009년의 1,374건으로 433건 증가하여 1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0년간 총범죄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99.3%에 이르고 있어 범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김길태 사건에서도 보듯이 검거율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미미하다. 물론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하여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회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의 관점에서는 범죄예방 단계를 지난 시점이므로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로 할 수 없었다.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몇 차례 받았다. 아들(14세)도 동생을 못 지켜줬다는 생각에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사건이 터진 뒤 모자(母子)는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부산을 떠나고 싶었지만 딸이 있어 그러지도 못했다. “김길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여러 번 쓰러졌어요. 9개월 넘게 내 새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정상 생활이 되겠어요? 딸을 죽인 놈이 내가 낸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먹고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홍 씨는 ‘김길태’라는 이름만 나오면 전화 인터뷰 내내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동아일보, “직장 관두고 이사 해봐도 ... 쫓아오는 ‘그 악몽’” 2010. 12. 10).

관심 있게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마. 강도범죄피해자

우리 「형법」은 제38장에서 절도와 강도의 죄를 규정하면서 제333조에 강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의 수법으로는 침입강도·노상강도·차내강도·해상강도·차량이용강도·약취강도·마취강도·인질강도·강도강간 등 상당히 많다.<sup>88)</sup>

강도범죄 피해의 대부분은 재산적인 것이 중심을 이룰 수도 있지만 절도나 사기, 횡령죄에 비교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sup>89)</sup> 하지만 강도범죄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피해는 단순한 재산범죄와 다르다는 사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강도범죄의 피해자는 강도를 당한 후 대인기피증상은 물론 피해의식에 의한 강박증상도 나타난다. 즉, 피해상황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가능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강도범죄의 발생현황과 검거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3-12>와 같다.

<표 3-12> 2000-2009년(10년) 강도범죄 발생·검거 현황

| 구분     | 총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발생     | 55,792 | 5,461 | 5,692 | 5,906 | 7,292 | 5,832 | 5,170 | 4,838 | 4,439 | 4,811 | 6,351 |
| 검거     | 49,089 | 4,524 | 4,670 | 5,957 | 7,165 | 4,937 | 4,022 | 4,070 | 3,728 | 4,125 | 5,891 |
| 검거율(%) | 88.0   | 82.8  | 82.0  | 100.8 | 98.2  | 84.7  | 77.8  | 84.1  | 84.0  | 85.8  | 92.8  |

출처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98면, 2010 경찰백서, 123면 재구성.

<표 3-12>는 강도범죄의 발생건수를 보여 주고 있는데 2000년

88) 이순래 외 8인, 위의 책, 294면; 이러한 구분은 죄질에 따라 처벌에 차이를 두기 위함이다 (조병인, 앞의 책, 61면).

89)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3면.

5,461건에서 2009년 6,351건으로 11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7,292건을 정점으로 증감이 교차하고 있다. 평균 검거율은 88%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발생건수를 본다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책수립의 중요성이 큰 범죄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마. 강간범죄피해자

우리 「형법」은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면서 제297조에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에 관한 정의로 “피해자(남자 혹은 여자)의 의지에 반해 성적 관계를 가지는 범죄”라고 하거나<sup>90)</sup> “강제 또는 상대방의 법적 또는 실제적 동의 없이 여성과 불법적인 성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sup>91)</sup>

강간범죄피해자는 여성대상범죄피해자와 일면 중첩되기도 하지만, 여성범죄피해자가 강간범죄피해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성대상범죄피해자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간의 유형에는 면식강간(acquaintance rape)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데이트강간(date rape)이나 최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내강간 등이 있다. 데이트강간은 데이트비용을 남자 쪽에서 부담하고 일종의 보상심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며, 아내강간이란 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이다.<sup>92)</sup> 이러한 경우 사적 영역이나 가족의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

보통 강간범죄의 피해자 경우는 강간으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기 힘

90) Kenney, J., & More, H. Principles of Investigation, Minneapolis, MN: West, 1994, p.33.

91) 이순래·곽대경·기광도·김상원·박정선·박철현·연성진·이성식·최응렬,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8, 259면.

92) 이순래 외 8인, 위의 책, 260면.

든 상황에 처하므로<sup>93)</sup>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원의 중심이라고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과 같은 정도로 확대되었고, 사회적 기여는 이미 증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강간범죄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개인적 사건이 되고<sup>94)</sup> 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간범죄의 피해자는 위의 김부남 사건이나 김보은 사건에서 보았듯이 제1차 피해, 제2차 피해, 제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강간범죄의 발생현황과 검거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3-13>과 같다.

<표 3-13> 2000-2009년(10년) 강간범죄 발생·검거 현황

| 구분     | 총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발생     | 78,078 | 6,855 | 6,751 | 6,119 | 6,531 | 6,950 | 7,316 | 8,755 | 8,726 | 9,883 | 10,192 |
| 검거     | 69,894 | 6,139 | 6,021 | 5,522 | 5,899 | 6,321 | 6,441 | 7,936 | 7,796 | 8,654 | 9,165  |
| 검거율(%) | 89.5   | 89.6  | 89.1  | 90.2  | 90.3  | 90.9  | 88.0  | 90.6  | 89.3  | 87.6  | 89.9   |

출처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98면, 2010 경찰백서, 123면 재구성.

강간범죄는 2000년 6,855건에서 2009년 10,19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간범죄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간범죄의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 사. 폭력범죄피해자

93)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피해가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조병인, 앞의 책, 69면).

94)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이순래 외 8인, 앞의 책, 260-261면).

폭력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등한 관계에서 주먹다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나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폭력범죄의 유형으로는 가정폭력·학원폭력·표적범죄·직장폭력·조직폭력 등을 들 수 있다.<sup>95)</sup>

가정폭력은 배우자 상호간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보살핌과 폭력이 공존한다는 역설로 표현된다.<sup>96)</sup> 가정폭력에는 부모에 의한 자녀구타, 자녀에 의한 부모구타, 남매나 형제간의 구타, 노부부간의 구타,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 등 여러 조합을 생각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조사 보고되고 있다.<sup>97)</sup>

학원폭력은 주로 학교나 학원 등지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고,<sup>98)</sup> 표적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토킹(Stalking)<sup>99)</sup>으로 이해된다.

95)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다해, 2007, 209-300면;

96)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 내의 일로만 취급하여 사회적으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 2007년 여성부 전국 1만 가구 대상을 조사한 결과,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결과라 하겠다(고기숙·이금옥, “가정폭력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 피해자학회, 2010, 129면); 가정에서의 폭력은 아이들의 훈육으로서 처벌을 가하는 데서부터 극단적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많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살해범과 가족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다수의 여성살인 피해자가 바로 그들의 배우자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보다 가벼운 폭력은 그 정도가 더욱 보편적이어서 다수의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폭력을 자신의 배우자나 이성으로부터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폭력경험자들의 학대가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배우자 폭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넨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윤호, 위의 책, 210).

97) 김병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1999, 15면.

98) 학원폭력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학원폭력이 가해자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야기시키는 데, 그것은 학원폭력이 즐거움과 지위나 신분에 의해서 재강화되고 따라서 다른 공격적 행위가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이윤호, 앞의 책, 229면).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폭력조직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많다.<sup>100)</sup> 이 경우 피해자를 위한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피해자는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도 있다.<sup>101)</sup>

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피해자가 쉽게 자신의 고민을 표현할 수 있는 일정한 조직이나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검거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3-14>와 같다.

<표 3-14> 2000-2009년(10년) 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 구분     | 총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발생     | 3,020,705 | 333,630 | 338,045 | 283,930 | 294,893 | 286,464 | 285,363 | 281,969 | 295,156 | 305,508 | 315,747 |
| 검거     | 2,776,528 | 304,905 | 306,341 | 262,293 | 270,097 | 270,515 | 261,910 | 258,518 | 270,840 | 279,927 | 291,182 |
| 검거율(%) | 91.9      | 91.4    | 90.6    | 92.4    | 91.6    | 94.4    | 91.8    | 91.7    | 91.8    | 91.6    | 92.2    |

출처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98면, 2010 경찰백서, 123면 재구성.

99) 스토킹이라고 함은 개별행동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취해진다면 합법적일 수 있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범죄활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을 보낸 다거나 연애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직장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 각각의 행동이 그 자체 만으로는 범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행동이 공포감이나 부상을 심어줄 의도와 결합 하게 되면 불법적인 행위의 유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스토킹이 여성이 남 성과의 관계를 끝내고 그 남자를 떠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한다. 즉, 여성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여성을 떠나게 할 의사가 없는 남성이 여성의 뒤를 추적하고 위협하며, 괴롭히거나 폭행하기 시작한다(이운호, 위의 책, 262면).

100)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회복 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이 된다. ... 현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간혹 피해회복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피해자의 범죄전후의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만 범죄인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지운, 앞의 논문, 13-14면).

101) 이운호, 앞의 책, 222면.

폭력범죄는 여타 범죄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발생건수가 많다. 2000년 333,630건을 정점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나, 2009년 315,747건이 발생하여 연도별 발생건수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를 지위하기 위한 역할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능력을 개발하기 따라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역할의 수행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범죄와 범죄인에 관한 속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아무리 유능한 경찰이라도 재직할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퇴직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능력은 범죄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하고 대책에 부방비한 범죄피해자에게 훌륭한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의 지원대상 범죄피해자별로 퇴직 경찰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구체적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아동·청소년대상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아동이 약하고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범죄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 가족도 이러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부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낌으로써 아동의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동의 약한 특성을 악용하여 행하는 범죄에 관하여 퇴직 경찰공무원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등이 범죄자와 접촉하는 방법을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법을 통한 처리절차나 향후 대처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 과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적 역할을 한 경찰공무원의 조언을 받아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대부분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에 의한 경우가 많이 차지한다고 할 때,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경찰업무에 종사한 경찰공무원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이 비행을 하거나 범죄로 나아간 경우 성인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퇴직 경찰공무원은 자녀가 청소년이거나 청소년기를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여성대상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여성의 약한 특성을 악용하거나 범죄피해 사실을 외부에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실을 악용하는 범죄라고 할 때, 여성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퇴직 경찰공무원이 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를 다룬 경우라면 아동대상범죄피해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역할을 재직 중 수행한 퇴직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여성 경찰공무원도 다수 재직하므로<sup>102)</sup> 여성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 여성대상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현명할 것이다.

## 다. 노인대상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평균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노령화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노인이 피해자인 경우 그 피해회복은 청·장년에 비하여 힘들다고 할 것이다. 사회제도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하소연할 대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퇴직 경찰공무원이 지원을 한다면 최소한 연령에 의한 거부감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연령인 경우에는 언어의 사용이나 사는 방식 또는 사회적 인식이 유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지원에서 퇴직 경찰공무원은 역할 수행이 유리할 것이다.

## 라. 살인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살인범죄는 가해자가 검거되기 전까지 대부분 위협적인 존재로 남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검거되어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로 남을 수 있다. 가해자의 위협이 강한 경우에는 현직 경찰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면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

102) 2010년 현재 경정이하 여성 경찰공무원이 6,593명(경정 33명, 경감 144명, 경위 700명, 경사 1,194명, 경장 2,446명, 순경 2,076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53호, 2010, 64면).

우 중요하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악영향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데 살인범죄의 경우라면 그 피해자는 전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살인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정신적인 치료 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마. 강간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강간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은 범죄로 이해된다. 강간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표함으로써 2차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간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오해<sup>103)</sup>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퇴직 경찰공무원이 강간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간범죄에 대한 일부의 오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피해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간범죄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강간 가해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무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바. 강도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강도범죄피해자에 관한 퇴직 경찰공무원의 역할의 중심은 강도범죄에 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범죄이지만 범죄피해자의 피해 후유증이 강하다는 점이다.

103) 강간범죄에 관하여 강간범죄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를 유도한다라든가, 강간범죄는 강력한 저항을 하면 강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오해 등이 있다.

침입강도의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입는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출입문에 대한 시건장치의 강화로만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퇴직 경찰공무원은 강도범죄피해자를 위하여 다시 강도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강도범이 체포되었을 경우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와의 대면이 힘든 경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조사나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퇴직 경찰공무원은 범죄피해자를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가정폭력은 경찰이 개입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이다.<sup>104)</sup> 왜냐하면 가정은 외부인의 접근이나 간섭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경찰 등이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 일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항상 존재한다.<sup>105)</sup> 따라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단면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단면적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왜곡시키고 극단적인 갈등을 확대시켜 해결이 가정의 해체로 갈 수 있게 된다.<sup>106)</sup> 이러한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가정폭력의 피해

104) 사실 경찰은 능동출동하면 피해자나 인근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축내는 자들이 이렇게 굶겨서야 어떻게 범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하고, 너무 조기에 출동하여 개입을 시도하면(?) 경찰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 간섭이냐고 전혀 반대의 방향에서 비난한다(김병주, 앞의 책, 13면 각주 3)).

105) 은밀하고 섬세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범질서유지를 위한 범집행자로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가족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 갈등해결능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가정의 해체라는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병주, 위의 책, 13면).

106) 검찰이나 법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 각종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의 대응조치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경찰의 초기단계에서의 적절한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출동경찰

자를 지원하는 것은 가정을 해체시키지 않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107)</sup>

폭력조직에 의한 범죄는 살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재물의 강탈까지 매우 다양하다. 조직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도 1차·2차·3차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sup>108)</sup> 조직폭력의 경우 보통 조직원이 검거된 경우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를 위협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그 위협에 굴복할 경우 검거된 조직원은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피해자는 다시 폭력조직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소 후의 조직원에 의한 위협을 피해자는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sup>109)</sup>

---

의 조직과 운용방식을 정비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건이 다음 단계의 절차로 넘겨져 사법적 개입이 계속될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당사자 쌍방 간에 갈등과 상처만 깊어져 중국에는 가정이 파괴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김병주, 위의 책, 14-15면).

107)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나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정상적이지 못한 환자와 같은 개인이나 병리적 가족구조에 의해서 범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에 실행되는 개입의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원인의 해소나 제거 없는 개입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이윤호, 앞의 책, 225면).

108) 정지운, 앞의 논문, 14-16면.

109) 정지운, 위의 논문, 17면.

## 제4장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 제1절 경찰의 비전과 목표

주요 선진국들은 경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찰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sup>110)</sup> 우리 경찰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미래비전 2015’를 수립하고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적극 실행함으로써 조직 응집력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11)</sup>

경찰의 ‘미래비전 2015’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2015년의 비전은 영국 경찰 수준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된 ‘인정받는 경찰’, 2020년의 비전은 국민들의 신뢰가 정착된 ‘사랑받는 경찰’, 2030년의 비전은 ‘존경받는 경찰’로 정하고 있다.<sup>112)</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110) 일본은 ‘비전 2030’, 영국은 ‘2020 국가미래보고서’, 싱가포르는 ‘비전 2018’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경찰청, 2010 경찰백서, 385면).

111) ‘미래비전 2015’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별 해당 과제의 추진사항을 월 1회 점검·평가하고, 전체 과제의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인력확보와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미래비전 2015’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국·관별 비전추진 T/F’ 주관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당장 실행이 어려운 과제는 추진기반을 마련하면서 향후 치안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경찰청, 2010 경찰백서, 385-386면).

112)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87면;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44면.

<표 4-1> 비전과 목표

| 비전<br>목표 | 2009년  | 2015년   | 2020년   | 2030년   |
|----------|--------|---------|---------|---------|
|          | 현재의 경찰 | 인정받는 경찰 | 사랑받는 경찰 | 존경받는 경찰 |
| 국가고개만족도  | 216위   | 100위    | 50위     | 10위     |
| 종합청렴도    | 37위    | 10위     | 5위      | 1위      |
| 기관·단체신뢰도 | 10위    | 5위      | 3위      | 1위      |

출처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87면;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44면.

경찰이 ‘미래비전 2015’에서 설정한 경찰의 비전과 목표의 달성은 단순한 구호외침과 같은 일회적·일면적 시도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 실행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병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조직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일종의 거부감을 갖는다. 특히 이해가 첨예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직까지 경찰의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많지 않았다. 어찌보면 경찰이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퇴직 경찰공무원까지 배려하기에는 벅찬 것일 수도 있었고,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영역 외의 부분은 무시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퇴직 경찰공무원은 영원히 경찰을 떠난 사람이라거나 경찰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퇴직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발전을 바라는 선배로서 현직 경찰공무원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의 개척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찰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경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역할로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역할은 분명 경찰의 목표와 비전을 한 단계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퇴직 경찰공무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학력현황을 보면 전체 100,311

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8,829명으로 98.5%를 차지하고 있다.<sup>113)</sup>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확정하는 기준점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판단함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경찰의 범죄와의 연관성은 일반인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찰만의 독특한 경력이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범죄에 의해 행복의 터전이 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경찰이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이 발생하는 모든 또는 다수의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거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퇴직 경찰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경찰과 국가의 역할 수행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보인다.<sup>114)</sup>

범죄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피해는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남은 생활 전체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15)</sup>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대하여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소극적 태도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

113) 대학 졸업 이상은 36,155명(36.0%), 전문대학 졸업 이상은 61,474명(61.3%)이다(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53호, 2010, 66면).

114) 永井幹久, “大量退職期における退職警察官の活用について”, 警察時報 2006년 6월호, 警察時報社. 2006, 19면; 柳生 裕也, “大量退職期における退職警察官の活用”, 警察公論, 2005년 10월호, 立花書房, 2005, 26면.

115) 크던 적던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통상 그 사람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의 피해로 신체의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 혹은 사회와 타인에 대한 「안전」과 「신뢰」의 감정이 근본부터 흔들리며 “공포와 불안”, “고독의 감정”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그 위에 피해자는 사건 뒤에 주위에 눈과 마스크의 취재, 수사관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몇 번이나 상처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예컨대 중대한 신체적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라도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중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위원의 서비스 범위와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33면).

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여건은 피해극복을 위한 범죄피해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범죄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범죄의 원인도 각양각색이며, 범죄의 대상도 범죄피해자의 종류만큼 다양하다.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연령별로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성별에 의해 피해자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이와 같이 범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는 예측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의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범죄예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범죄에 대한 대책은 결국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은 형사정책임과 동시에 범죄대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범죄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경찰의 정책으로 적합하다는 입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가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지원은 경찰 외에도 검찰, 법원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활성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은 경찰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온 것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과 직접적인 법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활동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개정과 제정에 따라 우리 사회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점차 증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범죄피해자에 대한 비(非)범죄피해자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국가기관의 무관심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형식적인 보호가 아니라 범죄피해를 받기 전의 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받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 제2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조직과 교육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따라서 경찰제도는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국가의 기본제도로 이해되며, 경찰의 위상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sup>116)</sup>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찰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경찰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경찰도 다양한 관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담기구의 위상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성경찰관이 상주하는 ONE-STOP지원센터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는 병원의 업무이므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조직은 인권보호센터<sup>117)</sup>와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주라고 할 것이다.

116) 정지운, “경·경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251면.

117)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감사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등 각 기능별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추진체계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 교육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을 들 수 있다.

## 1.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경찰 조직

### 가. 인권보호담당관(인권보호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의 개정에 따라 수사국에 속해 있던 경찰의 범죄피해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권보호센터’<sup>118)</sup>가 감사관 소속 ‘인권보호담당관’으로 개칭하여 변경되었다.

범죄피해자대책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2차 피해방지,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일선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서포터 활동을 분석·지도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각급 경찰관서 및 경찰교육기관의 인권교육을 기획·실시하고 있다.<sup>119)</sup>

### 나.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

경찰청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직면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심리학 전

---

라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전체 사건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인권과 관련된 진정이나 제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사기능에 설치하자는 결정을 내려 기존 수사국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인권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인권보호센터’로 하였다(장병일·성홍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59면).

118) 인권보호센터는 ‘인권보호계’와 ‘범죄피해자대책계’로 구성되며, 각 계에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3명이 근무하고 있다(장병일·성홍재, 위의 책, 71면).

119) 장병일·성홍재, 위의 책 60면.

공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자 11명을 경찰관(경장)으로 특별 채용하여, 2007년 3월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대도시권 5개 지방경찰청에 배치하였다.<sup>120)</sup>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을 <표 4-2>와 <표4-3>과 같다.

<표 4-2> 2008-2009년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최종별 활동실적

| 연도   | 총계    | 살인    | 성폭력   | 강도    | 폭력   | 방화   | 기타    |
|------|-------|-------|-------|-------|------|------|-------|
| 2008 | 438   | 57    | 123   | 77    | 42   | 4    | 135   |
| 2009 | 673   | 62    | 245   | 123   | 39   | 0    | 204   |
| 총계   | 1,111 | 119   | 368   | 200   | 81   | 4    | 339   |
| 대비   | 100%  | 10.7% | 33.1% | 18.0% | 7.2% | 0.3% | 30.5% |

출처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175면; 경찰청, 2010 경찰백서, 422면.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최종별 활동실적을 보면 2008년은 총 438건이었고, 2009년에는 673건이었다. 2년간 총계 1,111건 중 가장 많은 활동실적을 보인 범주는 성폭력으로 368건(33.1%)이었다.

<표 4-3> 2008-2009년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별 활동실적

| 연도   | 총계    | 현장출동 | 심리평가 | 상담    | 정보제공  | 지원단체연계 | 기타   |
|------|-------|------|------|-------|-------|--------|------|
| 2008 | 2,521 | 152  | 144  | 1,083 | 817   | 211    | 114  |
| 2009 | 2,506 | 212  | 80   | 1,045 | 906   | 164    | 99   |
| 총계   | 5,027 | 364  | 224  | 2,128 | 1,723 | 375    | 213  |
| 대비   | 100%  | 7.2% | 4.4% | 42.3% | 34.3% | 7.4%   | 4.2% |

출처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175면; 경찰청, 2010 경찰백서, 422면.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별 활동실적을 보면 2008년은 총 2,521건이었고, 2009년에는 2,506건이었다. 2년간 총계 5,027건 중 가장 많

120)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적 충격이 큰 피해자의 경우 심리검사 및 치료를 병행하여, 각종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계하는 등 각종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사후관리 및 피해자보호 관련 일선 경찰관 교육,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09, 175면).

은 활동실적을 보인 활동은 상담으로 2,128건(42.3%)이었다.

5개 지방경찰청의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11명의 활동실적으로 이해할 경우 그 활동은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예컨대 동기간(2008-2009년)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2,483건(2008년 1,109건, 2009년 1,374건)<sup>121)</sup>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활동은 119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100%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이며, 2010년에도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새로이 특채<sup>122)</sup>를 하고 있음에 일면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이들만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2.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경찰 교육

### 가.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의 교육목표

경찰의 정기적인 교육 중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개설되어 있는 과정은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이다. 경찰은 경찰교육원에서 피해자서포터를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다. 교육목표를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피해자서포터 양성’과 ‘피해자 보호방안, 상담기법 등 교육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하는 이 과정은 ① 피해자 보호의 기본 이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및 제도 학습, ② 피해자 상담기법 능력 향상, ③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 및 관리능력 보강 등을 중점교육방향으로 하고 있다.<sup>123)</sup>

### 나.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개요와 직무과목

121) 제3장의 <표 3-2> 참조

122) 경찰청, 2010 경찰백서, 421면.

123) 경찰청, 경찰교육 훈련계획, 2010, 184면.

경감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1일 7시간으로 35시간 1주일을 교육하고 있다.<sup>124)</sup>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과정개요를 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개요

| 구분     | 전문교육과정                         | 기간   | 1주           |
|--------|--------------------------------|------|--------------|
| 대상     | 경감이하                           | 시간   | 35시간(1일 7시간) |
| 교과편성기준 | 직무교과 72%<br>소양분야 14%<br>기타 14% | 교육방법 | 합숙           |
| 입교요건   | 피해자서포터(수사부서 서포터 우선 교육 실시)      |      |              |

출처 : 경찰청, 경찰교육 훈련계획, 2010, 184면.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은 직무과목(피해자보호제도 및 법령 등) 7과목 25시간과 소양 및 기타 6과목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124) 수료기준은 전체 수업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한 자는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못한다(경찰청, 경찰교육 훈련 계획, 2010, 184면).

<표 4-5>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교과체계(13과목 35시간)

| 분야   | 교과목                      | 시간 | 비율   |
|------|--------------------------|----|------|
| 총계   | <b>13과목</b>              | 35 | 100% |
| 소양과목 | <b>2과목</b>               | 5  | 14%  |
|      | 1. 공직윤리<br>2. 특강(시책교육 등) | 2  |      |
| 직무과목 | <b>7과목</b>               | 25 | 72%  |
|      | 1. 피해자보호제도 및 법령          | 2  |      |
|      | 2. 피해자학                  | 3  |      |
|      | 3. 감수성 훈련                | 7  |      |
|      | 4. 피해자 상담원리와 기법(실습)      | 3  |      |
|      | 5. 갈등과 조정훈련              | 3  |      |
|      | 6. 분임토의(피해자 보호사례 등)      | 5  |      |
|      | 7. 생활체육                  | 2  |      |
| 기타   | <b>4과목</b>               | 5  | 14%  |
|      | 1. 입교등록 및 생활교양           | 1  |      |
|      | 2. 과정소개                  | 1  |      |
|      | 3. 자율학습                  | 2  |      |
|      | 4. 설문조사 및 수료             | 1  |      |

출처 : 경찰청, 경찰교육 훈련계획, 2010, 185면.

2010년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교육인원은 <표 4-6>과 같다.

<표 4-6>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교육인원 배정표

| 구분  | 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
| 계   | 21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 서울  | 36  | 6  | 5  | 5  | 5  | 5  | 5  | 5  |
| 부산  | 15  | 2  | 3  | 2  | 2  | 2  | 2  | 2  |
| 대구  | 8   | 1  | 2  | 1  | 1  | 1  | 1  | 1  |
| 인천  | 8   | 1  | 1  | 1  | 2  | 1  | 1  | 1  |
| 울산  | 4   | -  | -  | -  | 1  | 1  | 1  | 1  |
| 광주  | 4   | 1  | 1  | -  | 1  | -  | -  | 1  |
| 대전  | 4   | -  | -  | 1  | -  | 1  | 1  | 1  |
| 경기  | 31  | 4  | 5  | 4  | 4  | 5  | 5  | 4  |
| 강원  | 10  | 2  | 1  | 1  | 2  | 2  | 1  | 1  |
| 충북  | 8   | 1  | 1  | 2  | 1  | 1  | 1  | 1  |
| 충남  | 10  | 2  | 1  | 1  | 2  | 1  | 2  | 1  |
| 전북  | 13  | 2  | 2  | 2  | 1  | 2  | 2  | 2  |
| 전남  | 15  | 2  | 2  | 2  | 3  | 2  | 2  | 2  |
| 경북  | 20  | 2  | 3  | 3  | 3  | 3  | 3  | 3  |
| 경남  | 17  | 2  | 3  | 3  | 2  | 2  | 2  | 3  |
| 제주  | 4   | 1  | -  | 1  | -  | -  | 1  | 1  |
| 국방부 | 3   | 1  | -  | 1  | -  | 1  | -  | -  |

출처 : 경찰청, 경찰교육 훈련계획, 2010, 186면.

<표 4-6>에서 보듯이 전체 교육인원은 210명이며, 서울(36명), 부산(15명), 대구(8명), 인천(8명), 울산(4명), 광주(4명), 경기(31명), 강원(10명), 충북(8명), 충남(10명), 전북(13명), 전남(15명), 경북(20명), 경남(17명), 제주(4명), 국방부(3명) 등이다.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는 것은 일면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이 아직 부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찰공무원을 대거 범죄피해자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 본연의 업무를 무시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나선다면 치안유지와 범죄의 예방·진압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범죄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을 통한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조직과 활동은 경찰내·외부에서 아직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경찰조직과 활동이 범죄피해자지원의 측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채 과거 경찰의 입장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진압과 범죄인 검거 그리고 질서유지가 경찰의 주된 업무이고, 범죄인 처벌을 위한 증거의 수집에 경찰의 주된 역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경찰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역할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활동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활성화는 우선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직의 확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조직의 확대가 전제되는 경찰의 역할 확대가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의 정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①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과 ②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퇴직 경찰공무원만의 활동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현직 경찰공무원과 퇴직 경찰공무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상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지원과 협조는 개인의 연결이 아니라 국가 기관으로서의 경찰과 국가 기관인 경찰에서 활동한 경찰공무원의 연결이다. 따라서 퇴직 경찰공무원의 활동은 결국 국가 기관인 경찰의 역할을 일부분 담당하는 것이다.

현직 경찰공무원은 곧 퇴직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며, 퇴직 경찰공무원은 처음부터 경찰에 몸을 담지 않은 일반인과 구별된다.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다.

## 1.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퇴직 전·후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① 범죄피해자지원 교육의 확대, ②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역할 정립, ③ 승진시험과목의 변경, ④ 채용시험과목의 변경 등을

제시한다.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가 발현될 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이 시급하게 시도하여야 할 방안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노력은 일순간에 득도(得道)하듯이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결실을 거두기 위해 봄에 파종하는 농부의 자세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가. 범죄피해자지원 교육의 확대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사회적 관심을 받아 확대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를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고통을 가능한 한 빠르게 치유되기를 바란다. 범죄피해 때문에 받는 타인의 동정은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즉,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범죄와 관련하여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범죄피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피해자를 접할 때 일상적인 조언과 위로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범죄 후 범죄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갖게 되는 보복감정이나 피해의식 또는 다시 피해를 입을 위협에 대하여도 일반인은 알지 못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조하는 것 외에는 범죄피해자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에게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나 피해의식을 이해하고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한 도움이다. 이러한 도움은 단순한 감정적 지원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직 경찰공무원

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은 제3장 제3절에서 거론한 ‘지원대상 범죄피해자’별로 구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일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범죄에 따라 그 피해가 다르고 따라서 피해회복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 재직 중 범죄·범죄인과 직접적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적격자인 것이다. 문헌을 통한 연구나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간접적인 범죄관련 지식과 경험을 통한 범죄·범죄인의 이해는 범죄의 잔인성이나 범죄피해의 고통 등 극단적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은 쉽게 알 수 없다.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퇴직 경찰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을 갖고 있는 퇴직 경찰공무원에게 각 범죄에 적합한 지원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전문가적 관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 조직(<표 4-2>, <표 4-3>, <표4-6> 참조)은 범죄피해자의 숫자(<표 3-1> 참조)에 비하면 극소수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들에 의한 지원은 결국 극히 제한된 방법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퇴직 경찰공무원이 갖는 다양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의 파격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은 1주일 3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1년간 과정을 이수하는 인원도 전국에 걸쳐 210명의 경찰공무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피해자서포터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

체적인 연구가 없으므로 잘 알 수는 없지만 큰 효과는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두각을 보인 경우도 없으며, 경찰의 성과로 취급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과목 23시간으로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을 확대하여 교육하는 방법도 본 연구에서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의 교육의 확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보다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피해자지원 교육의 확대는 우선 교육시간의 확대로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화된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12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인 검거와 범죄피해자지원은 범죄를 중심으로 대항적(對向的)인 업무이다. 전자가 범죄인 검거를 통하여 사회악(社會惡)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선(社會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평생 전자에 치중하여 활동한 사람에게 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짧은 기간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교육과목은 심도 깊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 중 교육대상의 선정도 경과의 구분 없이 퇴직하기 전 1년 내지 2년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예컨대 연령정년에 따라 퇴직 1년을 앞둔 경찰공무원은 보통 58세 내지 59세라고 할 때, 이들은 경찰활동 중 신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범인 검거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은 주로 사무실 근무가 대부분일 것

이다. 만일 사무실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퇴직 1년 내지 2년을 앞 둔 경찰공무원이라면 기존의 경찰 업무를 위하여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새로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고 하여도 교육을 받은 후 업무수행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교육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받은 후 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 전담시키는 방법을 취한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을 거쳐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 후에도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평생 동안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역할 정립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담자가 극소수<sup>125)</sup>에 불과하며,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높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경찰 역할에 충실할 뿐 새로운 역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경찰인력으로서는 기존의 역할을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은 범죄피해자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조차도 최근에 들어서서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면,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경찰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125) 엄격하게 보면 경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전담하는 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뿐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능 중 경찰업무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 및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능의 연장선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경찰법(법률 제9114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 중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경찰의 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훈령(제604호, 2010. 10. 26 타법개정)인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은 제1조(목적)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이 매우 효과적임을 인정하여야 한다.<sup>126)</sup> 과거 경찰은 일방적인 법집행을 주 업무로 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하기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존재였다.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경찰은 자유롭지 못했고, 심지어 범죄인을 옹호하는 역할도 하였었다.<sup>127)</sup>

126)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의 증대는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개인적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범죄든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따라서 1차·2차·3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정지운, 앞의 논문, 21면).

127)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조직범죄의 경우 범죄조직의 활동을 방관하거나 도와주는 경찰은 많은 문헌에서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과 영화에서 범죄인 또는 범죄조직과 경찰공무원의 결탁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음은 단지 흥미만을 위한 허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국가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찰로 역할을 정립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검거와 처벌 등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경찰은 범죄의 발생과 동시에 처벌 그리고 처벌 후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은 경찰청 내에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sup>128)</sup>

범죄피해자에 관한 기초자료는 범죄발생 후 초동수사를 행하는 일선의 경찰서에서부터 준비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는 다른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 내의 상설 범죄피해자지원조직을 통하여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만이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조직을 통한 범죄피해자를 지원이 실질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 다. 승진시험과목의 변경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을 대상으로 이루어

128) 이미 범죄피해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존 조직을 상설 기구로 변경하는 것과 전담자를 배치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경찰청에 인권국을 신설하고 인권국의 하부조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 인권국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과에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사항을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 ... 인권과가 각 경찰서별로 신설되어야 한다. 인권과는 경찰서장 직속의 부서로 설치되어야 하며, 인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계로 구성할 수 있다. ... 경찰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일선기관이므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다른 업무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정지운,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0, 76-79면).

지고 있다. 이중 경장·경사·경위는 제1차 시험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고, 경감은 경찰실무(종합)과 형법이 제1차 시험이다. 경정의 경우는 헌법과 경찰행정학이 제1차 시험이다. 이러한 과목에 피해자학을 포함시키거나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인 선택과목<sup>129)</sup>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승진과목의 변경이나 새로운 과목의 신설은 이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유용성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롭게 경찰의 역할로 등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단순하게 업무의 확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승진과목의 변경을 위하여 일정기간 공고한 후 승진대상자로 하여금 피해자학을 선택하게 한 후 시행한다면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전에 변경과목을 선택하려는 수요의 조사와 변경 후 과급될 효과 등에 관하여 실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승진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따져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방안이라고 본다.

## 라. 채용시험과목의 변경

경찰공무원의 채용은 경정공개채용시험과 순경공개채용이 있고,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선발시험이 있다.

일반(보안)경찰의 경정공개채용시험과목은 필수과목이 행정법·형법·형

129) 일반경찰의 승진시험 선택과목으로 경장과 경사의 경우에는 경찰실무(1)·(2)·(3) 3과목이 있으며, 경감은 경찰행정법, 경정은 형사소송법이 있다. 경위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이 없다(경찰청, 2010 경찰백서, 378면).

사소송법이며 선택과목으로 범죄학·국제법·민사소송법(택1)으로 구성된다. 순경공개채용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경찰학개론·수사1·영어·형법·형사소송법이 있다.<sup>130)</sup>

일반(보안)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선발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경찰학개론·수사1·2·영어·형법·행정학·형사소송법 등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 행정법·경제학·민법총칙·형사정책(택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1)</sup>

이상의 분야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과목으로 피해자학을 신설하여야 한다. 시험과목으로 피해자학이 포함될 경우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역할의 정립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찰을 지원하는 수험생 등에 의한 관심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sup>132)</sup>이나 학원가의 교육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학이 채용시험과목으로 확정이 될 경우 피해자학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도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경찰에 입문하는 신입 경찰관들은 경찰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재직 중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세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일면 인권과 매우 밀접하다.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범죄피해자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학을 채용 전부터 연구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퇴직하게 되면 준비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30)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76면.

131)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76면.

132)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정립된 후 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로는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등이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이들 학과의 수는 200여개가 넘는다고 본다.

## 2.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은 ① 퇴직 경찰공무원의 교육 및 역할 부여, ②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자의 지위부여, ③ 범죄피해자서포터의 확대 등을 제시한다.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은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에 비하여 경찰이 간접적으로 담당할 부분이다. 따라서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과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전자를 시행한 후에 후자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은 단기적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가미하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전자를 엔진이나 바퀴 또는 핸들을 제작하여 조립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전조등이나 룸미러 또는 차량의 디자인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완성된 차는 전자만으로는 불완전하며, 후자가 가미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자만으로도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일부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퇴직 경찰공무원의 교육 및 역할 부여

경찰의 장기적 범죄피해자지원활성화 방안은 단기적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은 2013년 연령정년이 계급의 구분 없이 60세로 확정됨으로써 60세를 전후하여 대부분 퇴직하게 될 것이다(<표 2-2>, <표 2-3> 참조). 이렇게 본다면 퇴직한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을 받고 퇴직 후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퇴직한 경찰공무원에게도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범죄의 발생과 함께 다양한 대응 방법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경찰공무원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교육 방법 또는 교육 장소 등에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0세에 가까운 경찰 공무원은 최소한 범죄인의 검거 등 신체적 활동이 어렵다고 볼 때, 퇴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의 경찰의 역할과 다르다. 범인검거가 아니라 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필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과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아니라 과거 경험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섬세함과 전문성이다. 따라서 일반인이나 경찰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던 어떤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역할을 퇴직 경찰공무원은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교육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에게 매우 필요하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가진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때 이 활동은 과거 경찰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이다.<sup>133)</sup> 따라서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기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재직 중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퇴직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하는 퇴직 경찰공무원은 일단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민간인으로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퇴직 경찰공무원이 경찰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위상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또한 새로운 연

133) 예컨대, 가정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원인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김병주, 앞의 책, 15면).

구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 나. 범죄피해자지원자의 지위부여

퇴직 경찰공무원은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수행은 개인이 독자적으로도 행할 수 없게 된다. 범죄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인으로서 범죄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원을 도모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경찰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경찰의 업무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과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기반으로 계속하여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경찰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하에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을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방안이다. 즉,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하여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안이다.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비지도사와 같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퇴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관이라는 경찰청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개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퇴직 전·후의 교육의 질과 형태 그리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기준 등 다양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 다. 피해자서포터의 확대

범죄피해자서포터를 확대함으로써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서포터’라는 표현도 일면 개칭(改稱)이 필요하다.

서포터(supporter)라는 표현이 다양한 범죄피해자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관’이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범죄피해자를 극소수의 범죄피해자서포터가 담당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이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전담하는 주된 업무가 아니고 부과된 업무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장기적으로 범죄피해자서포터(또는 범죄피해자지원관)의 역할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수행이 형식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서포터의 확대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직 중 범죄피해자지원을 전담하는 범죄피해자서포터(범죄피해자지원관)의 지위에 있던 경찰공무원은 퇴직 후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범죄피해자지원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범죄피해자지원이 경찰의 역할로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제5장 결론

범죄피해자는 부러진 나무의 가지와 같다. 그 부러진 나뭇가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나무의 전체와 부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가지는 썩어 버리거나 결국 잘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이 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한 한 그 가지가 온전하게 나무의 일부분이 되어 성장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부러진 나뭇가지가 썩도록 방치하거나, 본줄기에서 잘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나무와 부러진 나뭇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동반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의 퇴직자는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경험을 살려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간이 길게 이어질 경우 퇴직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재직 중 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와 관련된 법집행을 한다. 물론 다른 공무원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를 수행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등에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집행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우는 매우 작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법집행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자의 신상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심지어는 생명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일반인들에게 위협적 존재인 동시에 친화적 존재로 인식된다. 범죄자의 경우에는 경찰을 피하게 되지만, 범죄피

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의지하는 것 외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

경찰공무원이 범죄와 연관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법집행과정이므로 행동이나 활동이 크게 문제될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일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즉 퇴직관리와 관련된 대책의 마련은 경찰청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공무원은 계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60세를 전후하여 퇴직하게 된다. 최근 과학과 예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며, 실제로 평균기대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인류의 생명연장은 세계적 노령화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반면 노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류 전체의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반면 결코 인생에서 퇴직할 나이가 아닌 60세를 전후하여 퇴직 한 사람들이 남은 여생동안 휴식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신의 건강이 허용한다면 대부분은 계속하여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경찰공무원도 퇴직 후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고민에 상당히 무관심하며, 현재 직면한 경찰관련 문제만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퇴직 경찰공무원이 경찰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경찰은 퇴직 경찰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퇴직 경찰공무원은 퇴직하는 순간 남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실질적인 경찰이 되기 때문이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의 구호가 있다.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 왜 불가능한가!

경찰이 퇴직 경찰공무원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기 따라 많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를 잘 이해하고, 범죄자를 직접 다룬 경험이 많은 경찰공무원이 가장 적임자이며, 퇴직 경찰공무원은 현재의 경찰인력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과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경력으로도 일부 가능하지만 동일한 업무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범인의 검거와 범죄의 진압 그리고 범죄증거의 수집이 범죄·범죄자의 앞면을 다루는 업무였다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범죄·범죄자의 뒷면을 다루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약자임과 동시에 방치하면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썩을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는 모든 피해자와 같이 원상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방관적인 입장이다. 국가가 계속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통을 치유해야 하듯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범죄피해자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경찰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퇴직 경찰공무원을 위한 전문적인 범죄피해자지원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 2002 경찰백서, 2010 - 2002.
- \_\_\_\_\_, 경찰교육 훈련계획, 2010.
- \_\_\_\_\_, 경찰통계연보 제53호, 2010.
- \_\_\_\_\_, 미래비전 2015, 2009.
- 김병섭·양재진, 공무원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2001.
- 김병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1999.
-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9.
- 김용세·김재민,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6.
- 변화순·이미정·김지경·하현정,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선승석, 경찰 정년제도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 염재호,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및 퇴직자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
- 유지웅, 노인범죄 발생 추이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09.

- \_\_\_\_\_, 노인 범죄피해 추이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10.
- 이순래·곽대경·기광도·김상원·박정선·박철현·연성진·이성식·최응렬,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8.
-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다해, 2007.
-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7.
- 정지운,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 \_\_\_\_\_,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0.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2.
-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최종술, 경찰인사관리론, 대왕사, 2004.
- 장병일·성홍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3.
- Ronald M. Holmes & Stephen T. Holmes/이웅혁·김성문 역,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 수사연구사, 2007

## 2. 논문

- 강용길,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범죄대응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경찰과 사회, 경찰대학, 2008.
- 고기숙·이금옥, “가정폭력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김두열·이승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기본원칙”,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 토론회 자료집(2010. 6. 21), 한국개발연구원, 2010.
- 김상균,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2009.
- 김원중, “경찰의 직급구조 실태와 발전 방향”,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 김은경,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쟁점과 과제-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 김재희,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 김지선, “경찰공무원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생애설계 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문성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심리학적 측면”,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현황과 전망”, 경성법학 제14집 제1호, 2005.
- 박윤규,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2호, 2009.
- 유봉호, “조기퇴직제가 직무 불안정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

- 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영우, “대한민국 경찰의 보수체계 현실화 방안”,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 이종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위원회 서비스 범위와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이효민,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우열, “대한민국 경찰의 근무환경 및 처우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 정유미,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주거지원제도”, 한국피해자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정지운, “경찰의 조직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역할”,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 \_\_\_\_\_, “경·경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 \_\_\_\_\_, “국가(기관)범죄에 의한 피해자”,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최영승,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최응렬, “대한민국 경찰의 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대토론회 - 자료집, 2010.

한상암, “경찰공무원 퇴직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99.

한상암·신성원,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욕구 및 취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 3. 기타

<인터넷 검색>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0885](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0885) 2010. 12.  
7. 검색.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60137>  
2010. 12. 6. 검색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61459>  
2010. 12. 6. 검색

<신문>

동아일보 2010. 12. 10

조선일보, 2010. 11. 27

중앙일보 2010. 12. 10., 2010. 11. 19

충청투데이 2010. 10. 21

## II. 외국문헌

永井幹久, “大量退職期における退職警察官の活用について”, 警察時報,  
2006년 6월호, 警察時報社, 2006.

柳生 裕也, “大量退職期における退職警察官の活用”, 警察公論, 2005년

10월호, 立花書房, 2005.

Kenney, J., & More, H. Principles of Investigation, Minneapolis, MN: West, 1994.

O. Glann Stahl and Richard A. Staufenberger, Police persnnel Administration, Police Foundation, 1974.

O. W. Wilson and Roy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McGraw Hill Book Co., Inc., 1977.

Rosenkoetter, M and Garris, John M. "Retirement Planning, use of tim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2, 2001.

Russell, Harold E. and Beigel, Allan,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for Effective Police Work", Basic Books., Publishers, 1976.

## 부록

1. 신체상의 장애등급 기준
2. 유족구조금에 대한 기준표
3.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준비서류

부록 1

[별표 1] 신체상의 장애등급 기준(제2조 관련)

| 등급    | 신 체 상 의 장 해  |
|-------|--|
| 제 1 급 | 1. 두 눈이 실명된 경우<br>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br>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br>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br>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br>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br>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br>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신체상의 장애 외의 장애로서 그 정도가 위 각 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제 2 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br>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br>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br>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br>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신체상의 장애 외의 장애로서 그 정도가 위 각 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제 3 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br>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br>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br>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br>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신체상의 장애 외의 장애로서 그 정도가 위 각 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제 4 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

|             |  |
|-------------|--|
| 4<br>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li> <li>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li> <li>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li> <li>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li> <li>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li> </ol>  |
| 제<br>5<br>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li> <li>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li> <li>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li> <li>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li> </ol>  |
| 제<br>6<br>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li> <li>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li> <li>3.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li> <li>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li>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경우</li> </ol> |
| 제<br>7<br>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li> <li>2.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li> <li>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li> <li>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li> <li>5.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li> </ol>   |

|              |   |
|--------------|---|
|              | <p>지 못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li> <li>7. 한 손의 손가락 모두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8. 한쪽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li> <li>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li>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li>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경우</li> <li>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li> <li>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경우</li> </ol>   |
| <p>제 8 급</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li> <li>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li>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li> <li>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li> <li>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li> <li>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li> <li>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li> <li>12. 온 몸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경우</li> </ol> |
| <p>제 9 급</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li> <li>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li> <li>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li> <li>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li> <li>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li> </ol>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li> <li>7.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경우</li> <li>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li> <li>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li> <li>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경우</li> <li>12.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li> <li>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li> <li>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li> </ol>   |
| <p>제 10<br/>급</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li> <li>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li> <li>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li> <li>4.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li> <li>5. 한 손의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li> <li>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li> <li>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경우</li> <li>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li> <li>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li> </ol> |
| <p>제 11<br/>급</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ol>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li>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li> <li>4.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li> <li>5. 척추에 기형이 남은 경우</li> <li>6.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잃은 경우</li> <li>7.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9. 흉부·복부 장기에 장애가 남은 경우</li> </ol>  |
| <p>제 12<br/>급</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애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li>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li> <li>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li> <li>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경우</li> <li>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li> <li>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경우</li> <li>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경우</li> <li>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li> <li>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li> </ol> |
| <p>제 13<br/>급</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li> <li>2. 한쪽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li> <li>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li> </ol>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li> <li>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li> <li>6. 한 손의 집게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li> <li>7. 한 손의 집게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li> <li>8.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li> <li>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li> <li>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ol>  |
| 제 14 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li> <li>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li> <li>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li> <li>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li> <li>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li> <li>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li> <li>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li> <li>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li> </ol> |

- 주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여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경우란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경우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에서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애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같은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수반하는 등급의 신체장애로 본다.

부록 2

[별표 3] 유족구조금에 대한 기준표(제12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br>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br>나.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br>다.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또는 조부모 | 3천만원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br>가. 피해자의 배우자<br>나.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br>다. 피해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 2천만원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천500만원 |

주: 1.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록 3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준비서류

| 구분               | 준비서류  |
|------------------|---|
| 주거지원신청시<br>(심의회) | ○ 신청서(첨부1)  |
|                  |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                  | ○ 위의 입증서류   |
| 주택공급신청시<br>(LH)  | ○ 공급신청서(소정양식, 신청장소비치)   |
|                  |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                  | ○ 신분증 및 도장  |
| 계약시<br>(LH)      | ○ 주민등록등본(신청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 1부(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
|                  | ○ 계약금(입주자부담금 이내)  |
|                  | ○ 신분증 및 도장  |

출처 : 정유미, 앞의 논문, 49면.

책임연구보고서 2010-32

## 퇴직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지원 역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